



제438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2025회계연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결산 검 토 보 고

▣ 일 반 회 계

2026. 8.

정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류 승 우

목 차

제1장 개요

I. 세입·세출 결산	1
1. 세입	1
2. 세출	3
II. 재무제표	10
1. 재정상태표	10
2. 재정운영표	11
3. 순자산변동표	12
III. 성과보고서	13
1. 성과체계	13
2. 2025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14

제2장 검토의견

I. 국민권익위원회 결산 주요 특징	15
1. 조직 및 정원	15
2. 결산 개요	16
II. 일반회계	19
[세입]	19
1. 기타경상이전수입: 공공기관 부패신고 보상금 상환액 징수 노력 강화 필요	19
[세출]	23
1. 행정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신규사업 추진 시 보다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및 관계기관 협의 노력 필요	23
2. 청렴도측정 및 부패영향평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영역의 경쟁 활성화 및 사업 추진체계 개선 검토 필요	29
3. 청렴교육및의식확산: 계약변경 절차 없이 학습관리시스템 임차료 증액 지급 부적정 등	36
(1) 계약변경 절차 없이 학습관리시스템 임차료 증액 지급 부적정	37
(2) 공모전 운영 규정 준수 필요	41
(3) 수의계약 사유 적용의 타당성 검토 미흡 및 후속 절차 미이행	45
4. 신고자보호보상및공익신고제도운영: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신청 절차 개선을 통한 집행실적 제고 필요	49
5.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운영: 채용실태 전수조사의 실효성 제고 필요 등	56

(1) 채용실태 전수조사의 실효성 제고 필요	57
(2) 공공기관 채용비리 신고사건 신속 처리 필요	61
(3) 공직유관단체 채용 규정 개선 컨설팅 사후관리 강화 등 채용비리 재발 방지 필요	63
6. 행정심판운영: 집행 효율성 제고를 위한 예산 편성방식 개선 필요 등 ..	67
(1) 집행 효율성 제고를 위한 예산 편성방식 개선 필요	68
(2) 환경 변화에 따른 지출 규모 변화를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할 필요	73
 ※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78

제1장 개요

I. 세입·세출 결산

1. 세입

- 2025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9억 1,200만원이며, 14억 1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1억 1,500만원을 수납하였음.

〈2025년 세입실적〉

(단위: 백만원)

과 목	예산액	징 수 결정액	수납액	불 납 결손액	미수납 액
합 계	912	1,401	1,115	-	286
○ 기타재산이자수입	-	1	1	-	-
- 기타재산이자수입	-	1	1	-	-
○ 과태료	180	53	-	-	53
- 신고자 보호의무 위반 이행강제금	180	33	-	-	33
- 신고자 보호위반 과태료	-	10	-	-	10
- 비위면직자 해임요구 거부 과태료	-	10	-	-	10
○ 징계부과금	-	20	20	-	-
- 징계부과금	-	20	20	-	-
○ 위약금	-	6	6	-	-
- 위약금	-	6	6	-	-
○ 가산금	-	4	-	-	4
- 가산금	-	4	-	-	4
○ 기타경상이전수입	682	1,286	1,056	-	230
- 부패신고 보상금 상환액	568	891	671	-	220

과 목	예산액	징 수 결 정액	수납액	불 납 결 손액	미수납 액
- 공익신고 보상금 상환액	83	46	46	-	-
- 민간보조금 집행잔액	10	0.2	0.2	-	-
- 과오납금 반환금 등	21	349	339	-	10
○ 기타잡수입	50	31	31	-	-
- 시설물 사용료 등	50	31	31	-	-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는 2013년부터 세입예산을 계상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9억 1,200만원의 세입예산을 계상하였음.

〈최근 3년간 세입결산 및 2025년 세입예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23결산	2024결산	2025년		2026예산
			예산	결산(B)	
합 계	841	684	912	1,115	794
54 기타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1	2	-	1	-
546 기타재산이자수입	1	2	-	1	-
56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	△62	73	180	20	60
563 과태료	△62	73	180	-	60
564 징계부과금	-	-	-	20	-
57 변상금 및 위약금	1	49	-	6	-
572 위약금	1	49	-	6	-
58 가산금	-	-	-	-	-
581 가산금	-	-	-	-	-
59 기타경상이전수입	874	521	682	1,056	701
596 기타경상이전수입	874	521	682	1,056	701
69 잡수입	25	33	50	31	33
691 기타잡수입	25	33	50	31	33
71 고정자산매각대	2	7	-	-	-
713 기타고정자산매각대	2	7	-	-	-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2. 세출

1) 세출총괄

- 2025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1,083억 2,600만원이며, 그 중 96.3%인 1,043억 3,300만원을 집행하고 39억 9,4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5년 세출실적>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 결산									
	예산액 (A)	전년도 이월액 (B)	전용 등 (C)	예비비 (D)	예산 현액 (E=A+B +C+D)	집행액 (F)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율	
									예산 대비 (F/A)	예산 현액 대비 (F/E)
합 계	105,090	3,236	319 △319	-	108,326	104,333	-	3,994	99.3	96.3
○ 인건비 (대상)	52,132	-	-	-	52,132	50,514	-	1,618	96.9	96.9
○ 기본경비	8,128	-	90 △94	-	8,124	7,798	-	326	95.9	96.0
기본경비 (대상)	3,595	-	30 △30	-	3,595	3,427	-	169	95.3	95.3
기본경비 (비대상)	4,533	-	60 △64	-	4,529	4,371	-	158	96.4	96.5
○ 사업경비	44,830	3,236	229 △225	-	48,070	46,020	-	2,050	102.6	95.7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세출예산의 경비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전체 집행액의 48.4%인

505억 1,400만원을 인건비(1101)로, 7.5%인 77억 9,800만원을 기본 경비(1111)로 집행하였고, 44.1%인 460억 2,000만원을 사업경비로 집행하였음.

○ 2025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사업경비의 결산을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 청렴권익문화확산(1131) 사업의 예산액은 전체 예산액의 1.3%인 13억 9,000만원이고, 사업 예산액의 97.8%인 13억 5,900만원을 지출하였음.
- 청렴권익행정정보화(1132) 사업의 예산액은 전체 예산액의 16.9%인 177억 9,500만원이고, 사업 예산액의 114.7%인 204억 1,700만원을 지출하였음.
- 청렴권익대내외협력강화(1133) 사업의 예산액은 전체 예산액의 1.2%인 12억 3,800만원이고, 사업 예산액의 96.8%인 11억 9,800만원을 지출하였음.
- 부패·고충제도개선및국민소통활성화(1134) 사업의 예산액은 전체 예산액의 9.1%인 96억 900만원이고, 사업 예산액의 96.6%인 92억 7,900만원을 지출하였음.
- 국민고충해소(1135) 사업의 예산액은 전체 예산액의 1.5%인 16억이고, 사업 예산액의 98.4%인 15억 7,500만원을 지출하였음.
- 반부패청렴정책강화(1136) 사업의 예산액은 전체 예산액의 11.1%인

116억 5,500만원이고, 사업 예산액의 93.2%에 해당하는 108억 6,800만원을 지출하였음.

- 행정심판(1137) 사업의 예산액은 전체 예산액의 1.5%인 15억 4,300만원이고, 사업 예산액의 85.8%인 13억 2,400만원을 지출하였음.

〈2025년 단위사업별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	전용 등	예비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합 계	105,090	3,236	319 △319	-	108,326	104,333	-	3,994
○ 인건비(1101)	52,132	-	-	-	52,132	50,514	-	1,618
- 인건비_대상(100)	52,132	-	-	-	52,132	50,514	-	1,618
○ 기본경비(1111)	8,128	-	90 △94	-	8,124	7,798	-	326
- 기관운영기본경비_대상(200)	3,595	-	30 △30	-	3,595	3,427	-	169
- 기관운영기본경비_비대상(250)	4,533	-	60 △64	-	4,529	4,371	-	158
주요사업	44,830	3,236	229 △225	-	48,070	46,020	-	2,050
○ 청렴권익문화확산(1131)	1,390	-	-	-	1,390	1,359	-	31
- 청렴권익정책알리기(300)	1,390	-	-	-	1,390	1,359	-	31
○ 청렴권익행정정보화(1132)	17,795	3,236	125 △51	-	21,105	20,417	-	688
- 행정정보시스템운영_정보화(320)	7,665	3,236	-	-	10,901	10,620	-	281
- 국민소통시스템구축및운영_정보화(321)	3,346	-	125 △4	-	3,467	3,466	-	1
- 통합콜센터시스템운영_정보화(322)	6,784	-	△47	-	6,737	6,331	-	406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	전용 등	예비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 청렴권익대내외협력강화(1133)	1,238	-	2	-	1,240	1,198	-	41
- 반부패기술지원_ODA(331)	250	-	-	-	250	248	-	2
- 청렴권익국제교류(332)	670	-	-	-	670	644	-	25
- 청렴권익민간협력(333)	318	-	2	-	320	306	-	14
○ 부패고충제도개선및국민소통활성화(1134)	9,609	-	-	-	9,609	9,279	-	330
- 부패고충제도개선(340)	83	-	-	-	83	80	-	3
- 종합상담창구운영(341)	9,526	-	-	-	9,526	9,199	-	327
○ 국민고충해소(1135)	1,600	-	40 △40	-	1,600	1,575	-	25
- 고충민원조사활동(350)	1,600	-	40 △40	-	1,600	1,575	-	25
○ 반부패청렴정책강화(1136)	11,655	-	62 △134	-	11,584	10,868	-	716
- 청렴도측정및부패영향평가(360)	2,984	-	1 △1	-	2,984	2,868	-	116
- 청렴교육및의식확산(361)	2,411	-	16 △12	-	2,415	2,237	-	178
- 공직자행동강령운영(363)	78	-	-	-	78	78	-	-
- 신고자보호보상및공익신고제도운영(364)	5,500	-	△74	-	5,426	5,066	-	360
- 공공재정환수제도운영(366)	206	-	15	-	221	212	-	9
- 청탁금지제도운영(367)	166	-	3	-	169	155	-	14
- 이해충돌방지제도운영(368)	210	-	-	-	210	190	-	20
-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운영(369)	100	-	27 △47	-	81	62	-	19
○ 행정심판(1137)	1,543	-	-	-	1,543	1,324	-	219
- 행정심판운영(370)	1,543	-	-	-	1,543	1,324	-	219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2) 세출예산 이월내역

- 2025년 차년도 이월액은 없음

3) 세출예산 전용내역

- 2025년 전용액은 전년대비 82.9% 감소한 1억 9,100만원으로 그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각각 다음과 같음.
 - 기관운영기본경비(비대상)(1111-250) : 위원회 출장수요 증가 등에 따른 국내여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 기관운영기본경비(비대상) 일반수용비(210-01) 1,500만원, 기관운영기본경비(비대상) 임차료(210-07) 1,500만원, 기관운영기본경비(비대상) 시설장비유지비(210-09) 3,000만원을 국내여비(220-01)로 전용함.
 - 국민소통시스템구축및운영(1132-321)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국민신문고 시스템 서비스 중단 등에 따른 상담인력 충원 및 민원정보분석시스템 상용소프트웨어 기술지원, 재설치 비용 충당을 위해 신고자보호보상및공익신고제도운영 포상금(310-03) 7,400만원을 관리용역비(210-05)로 전용함.
 - 청렴권익민간협력(1133-333) : 2030자문단 출장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국내여비(220-01) 200만원을 국내여비(220-01)로 전용함.
 - 고충민원조사활동(1135-350) : 달리는 국민신문고 상담차량의 자산

취득비를 임차료로 변경하기 위해 고충민원조사활동 자산취득비(430-01) 4,000만원을 임차료(210-07)로 전용함.

- 청렴교육및의식확산(1136-361) : 청렴연수원 숙소동 미세균열 등 공사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기관운영기본경비(비대상) 공사비(420-03) 400만원, 청렴교육및의식확산 공공요금및제세(210-02) 500만원, 청렴교육및의식확산 시설장비유지비(210-09) 350만원, 청렴교육및의식확산 관리용역비(210-15) 350만원을 공사비(420-03)로 전용함.

〈2025년 세출예산 주요 전용내역〉

(단위: 백만원)

내 용	금 액
- 출장수요 증가 등에 따른 국내 여비 부족분 충당	60
- 국가정보자원관리 화재로 상담인력 충원 및 시스템 기술지원등	74
- 2030자문단 출장비 부족분 충당	2
- 달리는 국민신문고 상담차량의 자산취득비를 임차료로 변경	40
- 청렴연수원 숙소동 미세균열 등 공사비 부족분 충당	16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4) 세출예산 불용내역

- 세출예산 불용액은 예산액 대비 3.8%인 39억 9,400만원으로, 그 주된 부분은 인건비(1101) 예산액의 3.1%에 해당하는 집행잔액 16억 1,800만원, 기관운영기본경비(1111) 예산액의 4%에 해당하는 집행잔액 3억 2,600만원 및 기타 주요사업 예산액의 4.6%에 해당하는 20억 5,000만원임.

〈2025년 세출예산 불용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지급사유 미발생	계획변경 및 취소	예산절감	집행잔액	불용 합계
합 계	-	-	-	3,994	3,994
○ 인건비(1101)	-	-	-	1,618	1,618
○ 기관운영기본경비(1111)	-	-	-	326	326
사 업 비	-	-	-	2,050	2,050
○ 청렴권익문화확산(1131)	-	-	-	31	31
○ 청렴권익행정정보화(1132)	-	-	-	688	688
○ 청렴권익대내외협력강화(1133)	-	-	-	41	41
○ 부패 고충제도개선및국민소통활성화(1134)	-	-	-	330	330
○ 국민고충해소(1135)	-	-	-	25	25
○ 반부패청렴정책강화(1136)	-	-	-	716	716
○ 행정심판(1137)	-	-	-	219	219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II. 재무제표

1. 재정상태표

- 2025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당기 자산은 전기 대비 20억 100만원 (4.7%) 증가한 445억 3,500만원임.
- 금융자산은 전기 임차보증금 회수액 국고반납 등으로 인하여 3억 3,900만원 감소, 유·무형자산은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 구축 등으로 인하여 146억 1,200만원 증가, 기타자산은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선급금이 무형자산으로 대체되면서 122억 7,100만원 감소함

〈재 정 상 태 표〉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A)	2024(B)	증 감	
			금액(C=A-B)	비율(C/B)
자산합계(a)	44,535	42,534	2,001	4.7 %
I. 금융자산	1,567	1,906	(339)	(17.8 %)
II. 유·무형자산	42,880	28,268	14,612	51.7 %
III. 기타자산	88	12,359	(12,271)	(99.3 %)
부채합계(b)	92	71	21	29.6 %
I. 차입부채	-	4	(4)	(100.0 %)
II. 충당부채	92	67	25	37.3 %
III. 기타부채	-	-	-	-
순자산(a-b)	44,443	42,463	1,980	4.7 %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2. 재정운영표

- 재정운영결과는 전기 대비 63억 3,800만원(6.1%) 증가한 1,103억 8,900만원임.
- 프로그램순원가는 전기 대비 64억 3,600만원(6.2%) 증가한 1,105억 1,400만원으로 이는 인건비 및 운영비 증가에 기인함
- 비배분비용은 전기 대비 1억 200만원 감소한 3,700만원으로, 전기에 발생한 전기징수결의착오정정이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감소함
- 비배분수익은 전기 대비 400만원 감소한 1억 6,200만원으로, 당기에는 재화및용역제공수익 3,000만원, 기타수익 1억 3,200만원 등 총 1억 6,200만원이 비배분수익으로 집계됨.

〈재 정 운 영 표〉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A)	2024(B)	증 감	
			금액(C=A-B)	비 율(C/B)
I. 프로그램순원가	110,514	104,078	6,436	6.2 %
II. 관리운영비	-	-	-	-
III. 비배분비용	37	139	(102)	(73.4 %)
IV. 비배분수익	162	166	(4)	(2.4 %)
V. 재정운영순원가 (I + II + III - IV)	110,389	104,051	6,338	6.1 %
VI. 비교환수익 등	-	-	-	-
VII. 재정운영결과(V - VI)	110,389	104,051	6,338	6.1 %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3. 순자산변동표

- 당기 기말순자산은 전기 대비 19억 8,000만원(4.7%)이 증가한 444억 4,300만원임.
- 당기 순자산변동표상 재정운영결과는 전기 대비 63억 3,800만원 (6.1%) 증가한 1,103억 8,900만원임.
- 당기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1,123억 8,200만원이 집계되어 전기 대비 25억 1,0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재원의 조달 항목은 국고수입 36억 6,300만원 감소, 제재금수익 1,200만원 감소, 기타이전수익 6억 3,800만원이 증가에 따라 총 30억 3,600만원이 감소하였고, 재원의 이전 항목은 국고이전지출 4억 3,100만원 증가, 무상이전지출 9억 5,700만원 감소함에 따라 전기대비 5억 2,600만원이 감소함.

〈순 자산 변 동 표〉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A)	2024(B)	증 감	
			금 액(C=A-B)	비 율(C/B)
I. 기초순자산	42,463	31,637	10,826	34.2 %
II. 재정운영결과	110,389	104,051	6,338	6.1 %
III. 재원의조달및이전	112,382	114,892	(2,510)	(2.2 %)
IV. 조정항목	(13)	(15)	2	13.3 %
V. 기말순자산(I - II + III + IV)	44,443	42,463	1,980	4.7 %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Ⅲ. 성과보고서

1. 성과체계

- 국민권익위원회 임무는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를 조성하고 위법·부당한 행정으로부터 국민권익을 보호하여 깨끗한 정부,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이고, 비전은 ‘청렴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고 국민권익을 증진한다.’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성과체계는 1개의 전략목표와 1개의 프로그램목표, 1개의 성과지표로 구성되어 있음.

〈목표 및 성과지표 현황〉

구 분	전 략 목 표	프 로 그 램 목 표	성 과 지 표			
			소 계	일반재정	정보화	R&D
개수(개)	1	1	1	1	-	-
비율(%)	-	-	100	100	-	-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2. 2025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 국민권익위원회의 2025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는 1개 프로그램목표에 총 1개의 성과지표가 설정되어 있으며, 초과달성(130% 이상)은 0개, 달성(100~130%) 0개, 미달성(100% 미만)은 1개임.

〈프로그램목표별 달성 현황〉

구 분	'24 달성	'25 달성	'25 결산액 (억원)
전략목표 I : 청렴한 국가 실현, 국민의 고충해결로 국민권익을 증진한다.			
☐ 국민권익증진을 위해 반부패·청렴 정책을 강화하고,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친다.(국민권익증진)			460
· 국가청렴도(CPI)(단위 : 점)	O	X	460

주) ◎ 초과달성(130% 이상), ○ 달성(100%~130%미만), X 미달성(100% 미만)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프로그램목표별 성과지표 달성 세부 현황〉

프로그램 목표	성과지표	지표 유형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 대비 달성률	'23년	'24년	'25년
전략목표 I : 청렴한 국가 실현, 국민의 고충해결로 국민권익을 증진한다.							
프로그램목표 : I-1 국민권익증진을 위해 반부패·청렴 정책을 강화하고,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친다.							
국민 권익증진	①국가청렴도 (CPI) (점)	결과	국제투명성기구 (TI)에서 발표 하는 국가별 국가 청렴도(CPI)	목표	64.0	64.0	65.0
				실적	63.0	64.0	63.0
				달성률	98.4%	100.0%	96.9%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제2장 검토의견

Ⅰ. 국민권익위원회 결산 주요 특징

1. 조직 및 정원

- 국민권익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3인, 1실, 5국, 2관, 1대변인, 43과와 2개의 소속기관(정부합동민원센터, 국가청렴권익교육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25년 12월 31일 기준 국민권익위원회 정원은 574명(본부 497명, 소속기관 77명)이며, 현원은 560명(본부 479명, 소속기관 81명)임.

〈국민권익위원회 정·현원 현황〉

(단위: 명, '25.12.31. 기준)

구 분		계	정무직	별정직	일반직	연구사	전문경력관	특정직
합계	정원	574	4	1	554	1	11	3
	현원	560	3	1	541	1	11	3
본부	정원	497	4	1	478	1	10	3
	현원	479	3	1	461	1	10	3
소속기관	정원	77	-	-	76	-	1	-
	현원	81	-	-	80	-	1	-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2. 결산 개요

1) 총수입 · 총지출

- 2025회계연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총수입은 예산 대비 2억 300만원(22.3%)이 많은 11억 1,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억 3,100만원(63.0%)이 증가함.

〈2025회계연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회계연도				2025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추경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추경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892	892	684	△208	912	912	1,115	203	431
총수입	892	892	684	△208	912	912	1,115	203	431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2025회계연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총지출은 예산 대비 7억 5,700만원(△0.7%)이 적은 1,043억 3,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6억 6,300만원(△3.4%)이 감소함.

〈2025회계연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회계연도				2025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추경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추경대비 (D-C)	
	본 예산	추경(A)			본 예산	추경(C)			
예 산	111,592	111,592	107,996	△3,596	105,090	105,090	104,333	△757	△3,663
총지출	111,592	111,592	107,996	△3,596	105,090	105,090	104,333	△757	△3,663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2) 세입·세출 결산

- 2025회계연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9억 1,200만원이며, 14억 1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11억 1,500만원을 수납하고, 2억 8,600만원 미수납되었음.

〈2025회계연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B)	세입 예산현액 (A+B)	징수 결정액	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본예산	추경 (A)						
일반회계	912	912	-	912	1,401	1,115	-	286
합 계	912	912	-	912	1,401	1,115	-	286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2025회계연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1,083억 2,600만원이며, 이 중 1,043억 3,300만원을 지출하고 39억 9,400만원은 불용처리함.

〈2025회계연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증감액(B)			세출 예산현액 (C=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일반회계	105,090	105,090	3,236	±191	-	108,326	104,333	-	3,994
합 계	105,090	105,090	3,236	±191	-	108,326	104,333	-	3,994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3) 재무결산

- 2025회계연도 말 기준 국민권익위원회 자산은 전기 대비 20억 100만원이 증가한 445억 3,500만원으로 원스톱 행정심판시스템 구축 등으로 무형자산이 140억 3,600만원 증가에 주로 기인하고 있음. 부채는 전기 대비 2,1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충당부채 2,500만원의 증가에 기인함.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기 대비 19억 8,000만원 증가한 444억 4,300만원임.
- 2025회계연도 국민권익위원회의 프로그램순원가는 1,105억 1,400만원으로 전기 대비 64억 3,600만원 증가하였으며, 재정운영결과는 1,103억 8,900만원으로 전기 대비 63억 3,800만원 증가하였음.

〈2025회계연도 국민권익위원회 재무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A)	2024 (B)	증 감	
				금액 (A-B)	증가율 (A-B)/B
재정 상태표	자 산	44,535	42,534	2,001	4.7
	금융자산	1,567	1,906	(339)	(17.8)
	유·무형자산	42,880	28,268	14,612	51.7
	기타자산	88	12,359	(12,271)	(99.3)
	부 채	92	71	21	29.6
	차입부채	-	4	(4)	(100.0)
	충당부채	92	67	25	37.3
	기타부채	-	-	-	-
	순자산	44,443	42,463	1,980	4.7
재정 운영표	프로그램순원가	110,514	104,078	6,436	6.2
	재정운영순원가	110,389	104,051	6,338	6.1
	재정운영결과	110,389	104,051	6,338	6.1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II. 일반회계

[세입]

1. 기타경상이전수입¹⁾ : 공공기관 부패신고 보상금 상환액 징수 노력 강화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기타경상이전수입”은 부패신고 보상금 및 공익신고 보상금에 대한 상환액, 과오납급 반환금, 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징수하는 항목으로, 2025년 예산액은 6억 8,2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2억 8,600만원이며, 이 중 10억 5,600만원을 수납하고 2억 3,000만원을 미수납하였음.

〈2025회계연도 기타경상이전수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 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							
기타경상이전수입	682	682	-	682	1,286	1,056	230	-	701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2) 검토의견

- 권익위는 부패신고, 공익신고 등에 대한 보상금을 신고자에게 지급한 경우,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1) 세부사업: 기타경상이전수입(59-596)

비용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공공기관에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2), 「공익신고자 보호법」 3) 등에 따라 보상금 상환을 요구할 수 있음.

□ 2025년 기타경상이전수입 항목 미수납액(2억 3,024만원)의 상세내역을 살펴보면, 공공기관에게 상환받아야 할 부패신고 보상금 상환액 미수납액이 2억 2,009만원이며 이는 전체 기타경상이전수입 미수납액의 95.6%를 차지함. 공익신고 보상금 상환액의 경우 100% 수납하였음.

〈최근 3년간 기타경상이전수입 항목 미수납액 상세내역〉

연도	내용	금액(원)	건수(건)	비고
2023년	부패신고 보상금 상환액	68,418,440	36	납기 미도래 11건 (16,270,260원)
	과오지급금 등 반납액	11,966,820	28	-
2024년	공익신고 보상금 상환액	16,171,720	3	납기 미도래 3건 (16,171,720원)
	부패신고 보상금 상환액	251,242,290	44	납기 미도래 35건 (238,605,520원)
	과오지급금 등 반환액	31,858,820	29	-
2025년	부패신고 보상금 상환액	220,088,830	42	납기 미도래 16건 (21,587,260)
	과오지급금 등 반환액	10,148,320	14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0조2(보상금 등의 상환 및 환수) ① 위원회는 제68조제4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제2조제1호가목 중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기관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3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원회에 상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환을 요구받은 공공기관은 해당 금액을 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한다.
- 3)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보상금등의 환수 등) ② 위원회로부터 제26조제6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결정을 통지받은 공공기관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위원회가 보상금 지급 신청인에게 지급한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한다.

□ 이와 같이 부패신고 보상금 상환액 미수납액이 발생한 사유 중 납기 미도래 상환액은 전체 미수납액의 약 10%로, 미수납액의 대부분은 관계기관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한 것으로 보임.

□ 권익위는 이와 같이 부패·공익신고 보상금 상환액 미수납 해소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상환금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할 것을 요청하고, 독촉 공문 발송 및 납부 독려를 위한 출장을 실시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함.

○ 실제로 납부 독촉을 위한 공문 발송 횟수는 2025년 181회, 현지점검 출장도 8건으로, 2024년 공문 발송 90회, 현지점검 7건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2025년 공익신고 보상금 상환액은 100% 수납되었음.

〈신고보상금 상환액 납부 독려를 위한 공문 발송 현황〉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공문 발송 횟수	104회	90회	181회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신고보상금 상환액 납부 독려를 위한 출장 현황〉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출장 기관 수	6개	7개	8개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그러나 부패신고 보상금 상환의 경우 2024년에는 징수결정액 7억 1,717만원 중 2억 5,124만원이 미수납되어 미수납률이 약 35%였고, 2025년에는 징수결정액 8억 9,157만원 중 2억 2,009만원이 미수납되어 미수납률이 약 24.7%로 여전히 높음.

○ 또한, 부패신고 보상금 상환액 미수납액 중 납기 미도래를 제외한 순수 미수납액이 2025년 12월 31일 기준 1억 9,850만원으로, 전체 미수납액 2억 2,008만원 중 90%를 차지하고 있음.

〈부패신고 보상금 미수납 현황〉

(단위: 원, %)

연도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순수 미수납액 (납기 미도래 제외)	미수납률	비고
2023년	826,046,100	757,627,660	68,418,440	52,148,180	8.3	납기 미도래 11건 (16,270,260)
2024년	717,168,410	465,926,120	251,242,290	12,636,770	35.0	납기 미도래 35건 (238,605,520)
2025년	891,566,240	671,477,410	220,088,430	198,501,170	24.7	납기 미도래 16건 (21,587,260)

- 1) 징수결정액 : 당해연도 신규 상환결정액 + 과년도 미수납에 따른 재징수액
- 2) 수납액 : 당해연도 마감일(12.31.) 기준 실제 납부된 금액
- 3) 순수 미수납액 : 전체 미수납액 중 당해연도 마감일(12.31.) 기준 납부일이 미도래한 금액을 제외한 미수납 금액
- 4) 납기 미도래 : 당해연도 마감일(12.31.) 기준 납부일이 미도래한 금액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권익위는 부패신고 상환액을 대상 공공기관으로부터 보다 적극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세출]

1. 행정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⁴⁾: 신규사업 추진 시 보다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및 관계기관 협의 노력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행정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은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정보자원의 안정적 운영·관리 등을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109억 100만원 중 106억 2,000만원이 집행(집행률 97.4%)되고, 2억 8,100만원이 불용되었음.

○ 내역사업인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운영”은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 구현을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62억원 중 61억 7,3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6%)되고, 2,7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5회계연도 행정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행정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7,665	3,236	-	10,901	10,620	-	281	2,670
-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운영	2,964	3,236	-	6,200	6,173	-	27	- ⁵⁾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4) 세부사업: 행정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1132-320)

5) 동 사업은 2026년부터 행정심판시스템운영(정보화)(1132-324) 세부사업으로 분리(2026년 예산액 18억 2,200만원)되었음.

2) 검토의견

-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운영” 내역사업의 내내역사업인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 구축”은 일반·소청·조세·보상보험·토지 등 분야별 행정심판 기능을 수행하는 행정심판기관의 온라인 행정심판 창구를 하나로 통합하는 행정심판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임.
- 국민권익위원회는 2023년 행정심판시스템 통합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고, 2024년 6월부터 통합시스템 구축을 시작하여 2025년 6월 통합시스템을 개통하였음.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경과〉

기간	내용
'23. 3. ~ '23. 8.	BPR/ISP/ISMP 용역 추진
'23. 9. ~ '24. 3.	사업계획 수립 및 계약 의뢰
'24. 6. ~ '25. 6.	통합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25. 6.	통합시스템 개통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동 사업은 온라인 행정심판 창구를 일원화함으로써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행정심판을 수행하는 각 기관이 자동화·전자화된 통합시스템을 이용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증진하려는 취지에서 추진된바, 동 사업이 목표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통합시스템에 참여하는 기관의 수가 중요하였음.

- 당초 행정심판통합시스템 구축 사업을 계획할 당시 국민권익위원회는 통합 대상 기관을 118개 기관으로 계획⁶⁾하였으나, 24개 기관이 계획 수립 당시부터 통합시스템 참여에 미동의하였고, 통합시스템이 개통된 현재에는 미참여 기관 수가 오히려 4개 증가하는 등 통합시스템 기관 참여율이 저조한 실정임.

〈통합시스템 참여 기관 변화〉

(단위: 개)

구분	계획 수립 단계 (2023년 12월 기준)	시스템 구축 단계		시스템 개통	
		(2024년 10월 기준)	(2025년 5월 기준)	(2025년 6월 ~ 현재)	계획 대비
통합 대상 기관	118	118	118	118	-
참여 기관	94	93	95	90	△4
미참여 기관	24	25	23	28	+4
참여율	79.67	78.81	80.51	76.27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통합시스템에 참여하지 않는 개별 기관들의 성격과 시스템 미참여 사유를 살펴볼 때, 일부 기관은 기관의 독립성이나 국가안보·군사보안 등의 사유로 통합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또한 일부 기관의 경우 법령 개정 등을 통한 선행 조건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됨.

이에 비추어 볼 때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기관별 특성과 통합 가능성에 대한 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가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6) 행정심판 기능을 수행하는 총 123개 기관 중 5개 기관(중앙노동위원회, 특허심판원,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난민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이의신청) 제외.

○ 일반행정심판 및 소청심사를 수행하는 기관 중 통합시스템에 참여하지 않는 기관은 19개 기관으로, 해당 기관들은 사업계획 수립 당시부터 통합시스템 참여에 미동의하였음.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등과 같이 기관 성격상 독립적인 시스템 운영이 필요하거나 국가정보원, 군인사소 청위원회와 같이 국가안보·군사보안 등의 이유로 시스템 통합이 부적절한 기관들은 통합시스템에 참여하지 않음.

그럼에도 이러한 기관들까지 통합 대상 기관에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하였던 것은 통합의 조건 및 각 기관의 성격에 대한 고려와 관계 기관의 의견청취 등이 미흡하였던 것으로 보임.

○ 동 시스템 구축 시 참여하기로 하였으나 결국엔 참여하지 않은 조세분야 특별행정심판기관의 경우, 법률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세법(관세법)에 따른 처분에 불복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⁷⁾ 해당 기관들이 통합시스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함.

그러나 사업계획 수립 당시 법 개정을 전제로 참여 기관에 포함하였으나, 사업 추진 단계에서 통합을 위한 전제조건인 법 개정을 위한 노력 및 구체적 이행방안이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임.

7) 「국세기본법」 제60조의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복청구) ①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국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관세법」 제129조의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복청구) ①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관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통합시스템 미참여 기관 현황〉

구분		계획 수립 시 (24개 기관)	시스템 개통 이후 (28개 기관)	비고
일반행정심판		감사원, 국가정보원,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8개 기관
특별 행정 심판	소청	중앙 소청심사위원회, 국회 소청심사위원회, 법원 소청심사위원회, 헌재 소청심사위원회, 선관위 소청심사위원회, 중앙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군무원인사소청심사위원회, 육군본부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공군본부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해군본부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11개 기관
	조세	-	조세심판원, 국제심사위원회, 관세심사위원회	3개 기관
	보상 보험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어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 어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5개 기관
	토지 등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광업조정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1개 기관

* 음영으로 표시된 기관은 계획 당시 통합시스템 참여기관이었으나, 그 이후 미참여로 변경한 기관을 의미함.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한편, 국민의 권익구제 편의성 제고 및 시스템 통합을 통한 예산 절감이라는 기대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조세, 보상보험 등의 분야와 같이 개별 처분에 따라 소관 심판기관의 개별시스템을 각각 이용하여야 하였던 특별행정심판기관의 온라인시스템을 통합하는 것이 중요함.

그러나 이러한 기관들의 참여가 특히 저조하다는 점에서 당초 통합시스템 구축 사업이 목표하였던 효과를 달성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분야별 특별행정심판기관(소청심사 제외) 통합시스템 참여 현황〉

(단위: 개, %)

구분	총 기관	통합 대상 기관 (A)	통합시스템 참여 기관 현황		
			참여 (B)	미참여	참여율 (B/A)
조세 (개별시스템 이용)	3 (3)	3 (3)	0 (0)	3 (3)	0 (0)
보상보험 (개별시스템 이용)	8 (4)	8 (4)	3 (2)	5 (2)	37.5 (50)
토지 등 (개별시스템 이용)	5 (2)	4 (1)	3 (0)	1 (1)	75 (0)
계	16 (9)	15 (8)	6 (2)	9 (6)	40 (25)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이상을 종합하면,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 구축”은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 제반 조건, 관계기관 의견 등의 고려가 미흡하였고, 사업 추진 단계에서 통합을 위한 전제조건 달성 노력 및 관계기관 협의가 부족하여 다른 행정심판기관들의 통합시스템 참여가 저조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당초 목표하였던 사업의 효과를 달성하기 어렵게 되었음.

□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심판통합시스템에 보다 많은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향후 다수 기관의 참여가 전제되는 신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그 사업이 목표하였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보다 면밀한 계획 수립 및 관계기관 협의를 사전에 이행할 필요가 있음.

2. 청렴도측정 및 부패영향평가⁸⁾: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영역의 경쟁 활성화 및 사업 추진체계 개선 검토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청렴도측정 및 부패영향평가”는 공공기관의 청렴 수준과 부패유발요인 진단, 반부패·청렴시책의 적정성 및 효과성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각급 기관의 자율적 개선 노력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29억 8,400만원 중 28억 6,800만원이 집행(집행률 96.1%)되고, 1억 1,600만원이 불용되었음.

○ 내역사업인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는 공공기관의 종합적인 청렴수준을 평가하여 부패취약 분야 개선 등 각급기관의 반부패 노력을 촉진·지원하는 사업으로, 26억 4,500만원중 25억 4,200만원이 집행되고, 1억 3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5회계연도 청렴도측정 및 부패영향평가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청렴도측정 및 부패영향평가	2,984	-	-	2,984	2,868	-	116	2,741
-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2,645	-	-	2,645	2,542	-	103	2,3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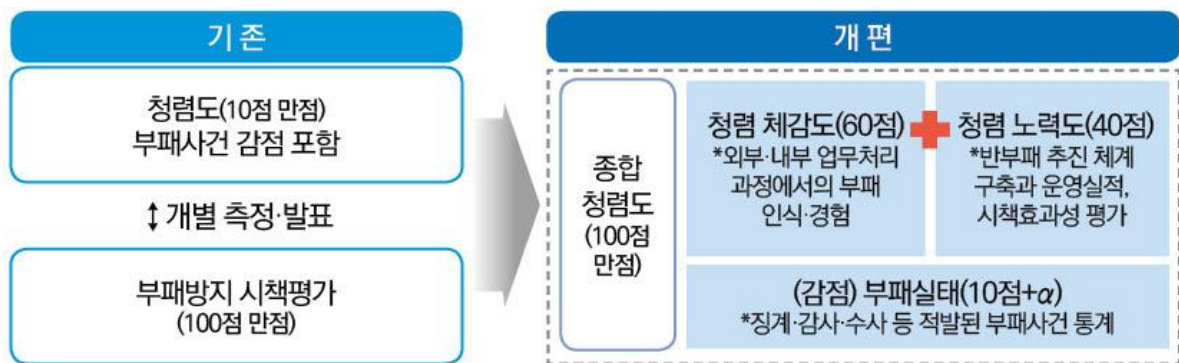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8) 세부사업: 청렴도측정 및 부패영향평가(1136-360)

2) 검토의견

- 국민권익위원회는 2002년부터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을 평가하는 ‘청렴도 측정’과 반부패 개선 노력을 평가하는 ‘부패방지 시책평가’의 이원적 평가체계를 운영해 왔음. 이후 2022년 이를 통합하여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를 각각 60%, 40% 비율로 하여 종합청렴도 점수를 산출하는 ‘종합청렴도 평가 체계’로 개편하여 시행하고 있음.

〈2022년 청렴도평가 개편 내용〉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2022년에는 개편된 종합청렴도 평가사업 수행을 위하여 ‘종합청렴도 평가사업’과 ‘청렴노력도 정성평가 용역’을 각각 발주하여 종합청렴도 평가사업 수행 업체에게 청렴노력도 정성평가 용역 수행업체와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평가결과를 취합하여 통합 점수표 작성 및 종합청렴도 등급을 산정하도록 하였음⁹⁾.

- 2023년부터는 예산 편성시 사업을 통합하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9)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사업 제안요청서

평가사업'으로 단일 편성하였고, 용역 발주도 1건으로 하게 되었음.

□ 그런데, 동 사업에서의 일반연구비(260-01목) 집행은 경쟁입찰 절차를 따랐지만, 유효한 응찰이 매년 1~2개 수준에 그치고 최근 동일 기관이 반복적으로 선정되는 결과가 지속되고 있음.

2022년 체계 개편 첫 해에 각각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 평가를 분리 수행하였던 기관이 2023년 통합 발주 전환에 맞춰 컨소시엄을 구성하였고 이후 해당 과업을 매년 수행해오고 있음.

〈최근 6년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용역 현황〉

연도	계약명	계약일	계약방법	계약금액	낙찰율	투찰자수	계약자
2026	2026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사업	2026.4.28.	일반 경쟁	2,310,000 천원	98.4%	2	A 리서치회사 & B 리서치회사 & C 연구소
2025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사업	2025.4.21.	일반 경쟁	2,530,000 천원	95.7%	2	A 리서치회사 & B 리서치회사 & C 연구소
2024	2024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사업	2024.5.24.	일반 경쟁 →수의	2,669,550 천원	97.5%	1	A 리서치회사 & B 리서치회사 & C 연구소
2023	2023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사업	2023.5.9.	일반 경쟁	2,232,940 천원	97.0%	2	A 리서치회사 & B 리서치회사 & C 연구소
2022	2022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사업	2022.4.19.	일반 경쟁	2,002,560 천원	96.0%	2	A 리서치회사 & B 리서치회사
	2022년도 공공기관 청렴노력도 정성평가 용역	2022.7.13.	일반 경쟁 →수의	117,600 천원	98.0%	1	C 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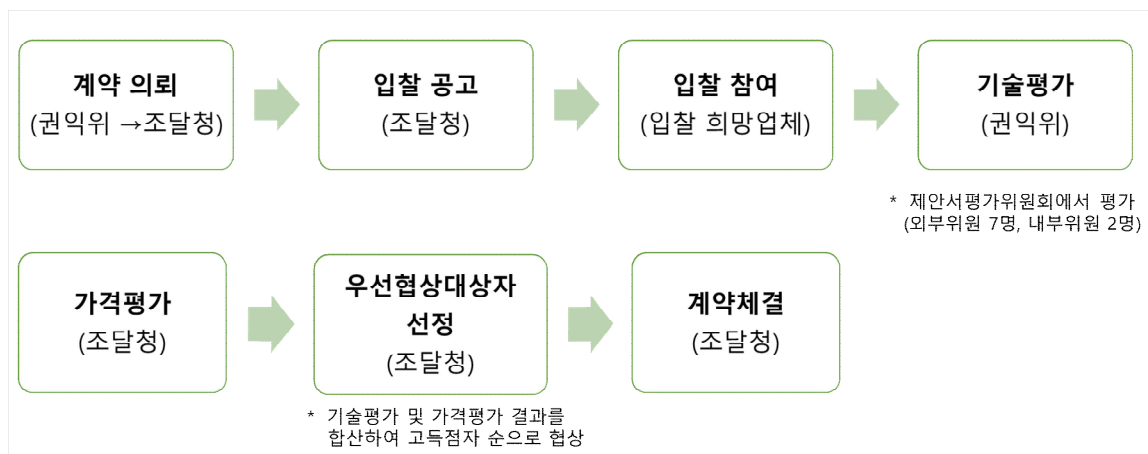
연도	계약명	계약일	계약방법	계약금액	낙찰율	투찰자수	계약자
2021*	2021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사업	2021.5.18.	일반 경쟁	1,805,000 천원	99.2%	2	A 리서치회사 & B 리서치회사
	2021년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2021.6.4.	일반 경쟁 →수의	117,600 천원	98.0%	1	D 산학협력단

* 2021년에는 특화모형(지방의회·국립대학·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사업 용역도 있었음.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낙찰자 선정은 입찰 참여 업체들의 제안서에 대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 결과를 합산하여 사업자가 선정되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기술평가는 외부위원 7명과 내부위원 2명으로 구성된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고 가격평가는 조달청이 실시하여 최종 결과가 우수한 업체가 선정된 것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용역업체 선정절차〉



□ 그런데, 동일한 컨소시엄의 반복적인 수주는 특정 업체에 사업 수행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되는 구조를 고착화하여 향후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더욱 어렵게 하고, 경쟁을 통한 품질 개선 및 혁신 유인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며, 특정 업체에 대한 사업 수행 의존도가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개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대하여 권익위는 최근 몇 년 간 동일업체가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 응찰업체 수가 많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매년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수행 역량과 기술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수한 업체가 선정된 것이며, 사업규모 대비 예산액이 크지 않고 전문 기술력이 요구되어 참여 가능한 업체가 제한적인 측면이 있다는 입장임.

□ 그러나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매년 유효한 응찰 수가 1~2개 수준에 그치고 동일 업체가 계속 선정되는 구조가 지속된다면 제도 개선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함.

○ 평가 체계 통합으로 리서치 인프라와 학술 연구 역량을 동시에 보유할 것이 요구되며, 제안서 기술평가¹⁰⁾의 ‘과업에 대한 이해도’, ‘조사·평가 계획’, ‘조사 경험’ 등에서 연속적으로 수행한 업체가 유리한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에서 신규 업체의 참여가 제한적인 측면도 있으므로, 원인 분석과 함께 설명회 개최, 공고 기

10) < 기술평가표 >

간의 확대¹¹⁾, 분할 발주 검토 등 다양한 기관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실질적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현재 사업 추진방식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종합청렴도 평가는 대표적인 공공부문 평가제도로, 전문성·연속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종합청렴도 평가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권익위의 자체 평가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평가 전문성을 갖춘 평가기관의 설립·운영 등 안정적인 평가 수행체계를 구축하는 방안 등이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음.

평가 분야	평가 항목	배점	
과업에 대한 이해도	▲ 과업의 목적 및 내용에 대한 이해도	8	18
	▲ 제안내용의 타당성 및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10	
조사·평가 계획	▲ 조사·평가 설계(표본설계, 응답거절 관련 대책, 평가방안 등)의 타당성 * 전문가 평가단의 구성·운영 방안, 평가추진의 전문성·효율성	16	28
	▲ 조사·평가 계획(면접원 및 평가인력 관리, 검증체계, 비표본오차 방지 등)의 타당성	7	
	▲ 조사·평가 진행절차 및 일정계획의 적절성	5	
조사·평가 수행능력	▲ 시설규모(전화회선, 실사실, 서버 등)의 적합성 * 공동수급체 구성 시 업체 간 역할분담 등 공동수급체 구성의 적정성 포함	14	29
	▲ 제안업체 및 관리인력의 조사·평가 경력 및 전문성	10	
	▲ 면접원(고정·등록조사원 규모 등) 및 평가인원 수급·관리 능력	5	
조사 경험	▲ 최근 2년 간 사회조사·평가 경험, 유사 연구·용역 과제 수행 경험	5	5
결과 분석	▲ 조사·평가 결과 분석의 충실성 및 전문성 * 자료취합, 문서관리, 평가결과 및 분석내용의 검증 등 포함	10	10
합계		90	

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5항에 따르면,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되, 긴급입찰사유가 있는 경우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음.

그런데, 권익위의 종합청렴도 평가사업 용역의 공고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각각 22일, 12일, 14일, 22일, 21일로 확인됨. 이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 및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에 따라 긴급입찰 방식으로 추진하였으나, 해당 사업은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되는 평가사업으로 코로나19 및 경제위기 극복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긴급입찰 적용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는 반복적으로 동일 업체가 선정되는 원인을 분석하여 참여 제한요인을 개선하는 등 경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사업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고려한 적절한 추진방식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3. 청렴교육및의식확산¹²⁾: 계약변경 절차 없이 학습관리시스템 임차료 증액 지급 부적정 등

1) 사업 및 결산 개요

□ “청렴교육및의식확산”은 청렴교육과정 및 교육시설을 운영하고, 반부패·청렴사례 공모전 및 국민 청렴의식 확산 프로그램 등을 기획·시행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24억 1,500만원 중 22억 3,700만원 (92.6%)이 집행되고 1억 7,8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5회계연도 청렴교육및의식확산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청렴교육및의식확산	2,411	-	4	2,415	2,237	-	178	2,967
- 청렴교육과정 운영	765	-	-	765	715	-	50	795
- 청렴교육시설 운영	899	-	4	903	817	-	86	1,310
- 청렴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80	-	-	80	80	-	-	200
- 반부패·청렴사례 공모전 운영	185	-	-	185	179	-	6	150
- 국민 청렴의식 확산 프로그램 개발·운영	384	-	-	384	344	-	40	407
- 청렴윤리경영 교육과정 운영	70	-	-	70	69	-	1	70
- 국민권익위원회 학술지 발간	28	-	-	28	33	-	△5	35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12) 세부사업: 청렴교육및의식확산(1136-361)

2) 검토의견

(1) 계약변경 절차 없이 학습관리시스템 임차료 증액 지급 부적정

□ 내역사업 “청렴교육과정 운영” 사업은 공직자 등에 대한 반부패·청렴 교육을 실시하여 공직사회의 청렴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7억 6,500만원 중 7억 1,500만원이 집행(93.5%)되고, 5,000만원이 불용되었음.

○ 동 내역사업의 예산에는 학습관리시스템 임차료가 편성되어 있는데, 이는 나라배움터 이용이 제한된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게 대한 원활한 청렴 사이버교육 지원을 위하여 국가청렴권익교육원¹³⁾ 홈페이지에서 연결 가능한 사이버 청렴교육 전용 학습관리시스템을 임대하는 것임.

□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청렴권익교육원 학습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당초 49,610천원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교육 인원이 증가하였다는 사유로 계약 종료 후 계약금액의 약 38%인 1,900만원을 증액 집행함.

○ 이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계약 시 기본금액을 기준으로 체결하였고, 교육 인원 증가 등 초과 금액분¹⁴⁾은 시스템 운영이 종료된 연말에

13) 2025년 12월 기관 명칭을 ‘청렴연수원’에서 ‘국가청렴권익교육원’으로 변경함.

14) 기본요금은 월 전송량 10,000GB 기준, 추가요금은 초과 사용량에 비례하여 부과되 2025년 4월까지 GB당 165원, 2025년 5월부터 GB당 220원씩 과금된 것임.

<2025년 학습관리시스템 초과사용량 및 초과요금>

정산하여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입장임.

〈2025년 학습관리시스템 임차 계약·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계약명	계약기간	계약방식	수의계약 사유	계약금액	집행액
2025년 청람연수원 학습관리 시스템(LMS)운영 용역	'25.1.20.~ '25.12.12.	수의계약	시행령 제26조 제1항제5호아목 클라우드서비스 계약	50	69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그런데, 계약서를 살펴보면 해당 계약은 ‘확정 계약¹⁵⁾’으로 체결되었는데, 확정계약은 계약체결 전에 예정가격을 미리 결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확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방법으로, 확정계약이 체결되면 발주기관은 실제 지출된 비용에 관계없이 미리 확정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함¹⁶⁾.

구분	교육 수료생	초과 사용량(GB)	단가	초과요금
1월	-	-	-	-
2월	16,511	24,909	165원	4,109,985
3월	15,650	23,177	165원	3,824,205
4월	13,440	15,188	165원	2,506,020
5월	6,853	3,588	220원	789,360
6월	6,703	2,208	220원	485,760
7월	8,548	4,192	220원	922,240
8월	8,485	4,576	220원	1,006,720
9월	9,613	6,691	220원	1,472,020
10월	8,819	5,836	220원	1,283,920
11월	11,034	11,699	220원	2,573,780
12월	5,406	121	220원	26,620
합계	111,062	102,185	-	19,000,630

※ '25.5월부터 학습관리시스템 보안 강화를 위한 플랫폼 전환에 따라 초과 단가 증가

- 15) 계약금액을 계약 시 확정하는지 사후정산하는지에 따라 확정계약, 개산계약 및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으로 나눌 수 있음. ‘확정계약’은 계약금액을 확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방법이고, ‘개산계약’은 미리 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 개략적인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 정산하는 형태의 계약방법이며,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은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 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 해당 비목의 원가를 검토하여 정산하는 방식의 계약방법임.
- 16) 계약이행이 완료된 확정계약에서 사후 계약금액 정산 가능여부 관련 유권해석(기획재정부 계약제도와 -1158, '12.9.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0조의 개산계약, 제73조의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과 계약서에 일부 비목에 대하여 정산하기로 정한 계약을 제외하고 총액 확정계약으로 체결된 계약에서는 계약상대자의 비

○ 다만, 입찰공고 시 사후정산 사항을 명시하고 계약체결 시 특수조건으로 사후정산조건을 정하였다면 사후정산이 가능하나¹⁷⁾, 과업지시서와 계약서 어디에도 교육인원 증가에 따라 사후 정산한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은 계약 체결 이후 물가변동, 설계변동, 그 밖에 계약내용이 변경되어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금액 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¹⁸⁾하고 있는데,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절차 없이 시스템 초과 사용량을 확인 후 추가 대가를 지급하였음.

○ 이러한 방식이 허용된다면 계약금액은 형식적인 의미만 가지게 되고, 계약 종료 후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협의만으로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게 되어 국가계약의 공정성·투명성을 훼손하게 됨.

○ 또한, 계약변경 절차 없이 계약금액을 초과하여 대금을 지급한 것은 계약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는 국가계

용지출내역으로 계약금액을 정산하지 않는 것이 원칙임. 따라서 확정계약서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보다 비용을 적게 지출하였다고 하여 그 차액을 지급하거나 계약금액 지급 후에 그 차액을 반납토록 하는 것은 확정계약의 성질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임.

17) 총액계약의 사후정산 가능 여부 관련 유권해석(기획재정부 계약정책과-461, '24.4.22.) 총액계약의 사후정산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1조에서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다만 입찰공고 시에 사후정산 사항을 명시하고 계약체결 시 특수조건으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사후정산조건을 정하였다면 가능할 것임.

1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제조계약·용역계약 또는 그 밖에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調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약법 제5조의 계약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음¹⁹⁾).

- 향후, 국민권익위원회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 변경 절차를 거쳐 집행하고, 근거 없는 사후정산 방식으로 계약대금을 추가 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1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계약의 원칙) ① 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2) 공모전 운영 규정 준수 필요

□ 내역사업인 “반부패·청렴사례 공모전 운영” 사업은 국민들이 청렴문화 확산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굿즈, 영상,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분야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1억 8,500만원 중 1억 7,900만원이 집행(96.8%)되고, 600만원이 불용되었음.

○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청렴의식 확산과 양질의 콘텐츠 발굴을 위해 2015년부터 매년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으며, 국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로 구성하여 전문가 심사와 대국민 투표를 통해 수상작을 선정하고 있음. 또한, 공모전 수상작은 작품집 발간 및 샌드아트 등 2차 창작물로 제작하여 교육 자료로도 활용하고 있음.

○ 2025년에는 초등학생 청렴교육 프로그램, 청렴 굿즈 디자인 등 3개 부문에서 532건을 접수하여 40점을 수상작으로 결정한 바 있음.

〈2025년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 응모·수상 현황〉

구 분	초등학생 청렴교육 프로그램	청렴 굿즈 디자인	청렴·연극 영상	
			공직자 부문	일반국민 부문
접수	188	237	88	19
수상	14	14	6	6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²⁰⁾에 따라 국민생활 밀착과제를 발굴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2021년 행정기관 주최 공모전에서 기존 수상작 등을 표절·도용하여 수상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²¹⁾,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모전 운영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모전 운영 실태조사와 국민 의견수렴을 통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행정안전부장관 등에게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음²²⁾.

○ 실태조사 결과, 응모작에 대한 표준화된 검증시스템이 부족하고 공모전을 등록·관리·접수하는 일원화된 창구가 없어 국민들이 기관별로 진행하는 공모전의 개최 여부를 알기 어려우며, 심사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확인되었음.

○ 이에 행정기관 공모전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2022년 8월 10일)하고, 공모전 정보를 등록·관리하고 공개 심사·검증을 진행할 수 있는 통합관리 플랫폼을 구축하였음.

2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법령 그 밖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21) 한겨레신문, “베낀 소설로 5개 문학상 휩쓴 손 씨, ‘복사-붙여넣기 보고서’로 특허청장상 받았다”, 2021.1.18.

22) 국민권익위원회, “행정기관 주관 공모전 공정성·신뢰성 제고방안”, 의안번호 제2021-356호(2021.6.7.)

동 규정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공모전을 시행하는 경우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공모전 통합관리시스템인 소통24(www.sotong.go.kr)에 공모전 공고를 게시하고, 수상작의 제목과 내용 등을 공개하여야 함²³⁾.

□ 그런데 정작 국민권익위원회는 반부패·청렴사례 공모전을 공고할 때 자체 공모전 홈페이지²⁴⁾에 게시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공고하고 접수를 진행함.

부정행위 검증은 1차 심사 통과 작품을 대상으로 2차 심사(대국민 투표) 진행 시 표절 신고 접수와 관계기관 공개검증을 통해 진행하고 있으며, 수상작 역시 자체 공모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음.

○ 이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모전 통합관리시스템에 공고 및 수상작 공개를 해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하며, 2026년 공모전부터는 동 규

23)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공모전의 공고) ① 행정기관의 장은 공모전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5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해당 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제13조에 따른 공모전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고해야 하고, 그 밖에 언론매체, 광고 등을 통해 공고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사항을 5일 이상 다시 공고해야 한다. 다만,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시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수상작의 공개)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제5항에 따라 수상작을 결정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13조에 따른 공모전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1. 수상작의 제목과 내용

2. 수상자 및 상장·상금·상품 등의 시상 내용

3. 수상작의 활용계획

4. 그 밖에 행정기관의 장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상자의 저작권 등 재산권이나 개인정보 침해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작을 공개하지 않거나, 수상자를 가명으로 처리하는 등 공개의 범위와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4) <https://www.integritycontents.kr/>

정에 따라 진행하겠다는 입장임²⁵⁾).

□ 동 규정은 행정기관이 시행하는 공모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모든 행정기관은 이를 준수할 필요가 있음. 특히, 권익위가 직접 발굴·권고한 제도개선 방안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제도개선 권고 제도의 실효성과 대외적 신뢰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

□ 향후,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모전 운영 시 공모전 통합관리시스템에 공모전 공고를 게시하고, 수상작을 공개하는 등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고, 제도개선 권고의 실효성을 스스로 약화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25) 권익위는 2026년 공모전을 공모전 통합 관리시스템(소통24)에 공고하였음(6.22).

(3) 수의계약 사유 적용의 타당성 검토 미흡 및 후속 절차 미이행

□ 내역사업 “국민 청렴의식 확산 프로그램 개발·운영” 사업은 사회 전반으로 청렴 문화 확산 및 의식 고취를 위해 미래세대 등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3억 8,400만원 중 3억 4,400만원이 집행(89.6%)되고, 4,000만원이 불용되었음.

○ 동 내역사업은 교육콘텐츠 개발을 위하여 6,000만원의 일반연구비(260-01목)을 편성하고 있는데, 그 중 5,000만원은 ‘교육대학교 청렴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를 위하여 집행하였음.

<2025년 국민 청렴의식 확산 프로그램 개발·운영 일반연구비 계약 내역>

(단위: 백만원)

계약명	계약금액	계약업체	계약기간	계약방식	수의계약 사유
교육대학교 청렴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	50	A교대 산학협력단	'25.3.4.~ '25.12.31.	수의계약	시행령 제26조제1항 제2호차목 (학술연구)
2025년 청렴교육 현업적용도 조사 및 분석사업	10	(주)B업체	'25.5.28.~ '25.12.19.	수의계약	시행령 제26조제1항 제5호가목2) (소액수의)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²⁶⁾은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의 경우 특정인 또는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최적의 낙찰자를 선정하기 위해 일반경쟁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특정한 사유에 해당하여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위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음.

□ 국민권익위원회는 ‘교육대학교 청렴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 용역을 A교대 산학협력단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는데,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유에 대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차목²⁷⁾ 중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을 근거로 하였다는 설명임.

○ 구체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대학에 청렴 관련 정규 교과과정 개설 추진 과정에서 A교대가 관심과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하였고, 양 기관간 체결한 MOU²⁸⁾(’25.2.6.체결)를 근거로 수의계약을 체결

2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

2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차.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을 필요로 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 계약,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 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 계약의 경우

28) 청렴한 미래인재 양성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A교육대학교 업무협약서 제3조(협력사항) 양 기관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상호 협력한다.

4. 대학생 및 초등학교 청렴교육 콘텐츠 개발 지원 및 협력

하였다는 것임.

□ 그러나 동 조항에 근거해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A교대 산학협력단이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것 외 해당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A교대 산학협력단만 있는 경우 등 경쟁이 성립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해석하여야 하고²⁹⁾, 법적 구속력이 없는 기관 간 업무협약서를 근거로 경쟁입찰을 배제한 것은 국가계약법을 위배한 것임.

○ 해당 연구용역의 과업지시서를 살펴보면, 제시된 과업은 국내 대학교 청렴교육 운영 현황 분석, 교육대학생 청렴교육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시범 운영 및 평가 등으로, 일반적인 정책연구·교육과정 개발 연구의 성격으로 보임.

○ 따라서,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은 복수의 학술·연구기관, 대학별 산학협력단 등이 있으므로, 위 조항을 근거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해당 용역에 참가할 수 있는 다른 기관의 입찰 참가 기회를 제한한 것임.

□ 나아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5항³⁰⁾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수의계약의 경우 감사원에 대한 통지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특정인

5. 청렴교육 정규교과 개설 및 운영을 위한 연구 및 협력

29) 용역 수의계약에서 ‘특정인’의 의미(기획재정부 질의회신, 회제41301-949, '03.8.2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차목에서 “특정인”이라 함은 당해 기술·용역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법률적·제도적 또는 능력의 측면에서 그 사람이 아니면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의미함.

3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⑤ 계약 담당공무원은 제1항제1호다목·라목, 같은 항 제2호, 제4호나목·다목 및 제5호다목·마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내용을 소속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고받은 사항 중 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에 대해서는 이를 감사원에 통지해야 한다.

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 계약은 이에 해당함에도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문제도 확인됨.

○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계약 당시 해당 조항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향후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임³¹⁾.

□ 동 의무는 감사원으로 하여금 해당 계약이 수의계약 허용 사유에 해당하는지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감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은 계약 행정의 투명성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사유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등 일반경쟁입찰 원칙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법정 후속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여 계약의 공정성·투명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31) 권익위는 해당 수의계약 건에 대해 감사원 통지를 완료하였고(7.14), 교육원 계약 담당자를 공공조달 역량개발원 교육 파견(6.10~6.12)을 실시하였다고 설명함.

4. 신고자보호보상및공익신고제도운영³²⁾: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신청 절차 개선을 통한 집행실적 제고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신고자보호보상및공익신고제도운영”은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포상금·구조금 지급, 보상심의위원회 운영 및 신고제도 교육 등을 통한 신고 활성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54억 2,600만원 중 50억 6,600만원이 집행(집행률 93.4%)되고, 3억 6,0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5회계연도 신고자보호보상및공익신고제도운영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신고자보호보상 및 공익신고제도운영	5,500	-	△74	5,426	5,066	-	360	4,994
- 신고자 보·포상금 등	5,425	-	△74	5,351	4,993	-	358	4,875
- 제도운영경비	60	-	-	60	57	-	3	84
- 공익신고제도 교육	15	-	-	15	16	-	△1	35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32) 세부사업: 신고자보호보상및공익신고제도운영(1136-364)

2) 검토의견

□ 내역사업 “신고자 보·포상금 등” 사업은 공익신고, 부패신고,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보상금·포상금·구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53억 5,079만원 중 49억 9,329만원이 집행(93.3%)되고, 3억 5,749만원이 불용되었음.

○ 동 내역사업 중 ‘보상금’ 지급실적을 살펴보면, ‘공익신고 보상금’의 집행잔액이 7억 3,841만원으로 가장 큰 규모의 잔액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음.

〈2025년 신고유형별 보상금 지급실적〉

(단위: 건, 천원)

구분	공익신고	부패신고	공공재정부정 청구 등 신고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신청건수	838	674	-*	148	4
지급건수	33	145	76	3	0
예산액	1,117,800	3,424,000	527,988	30,000	6,000
지급액	379,386	3,389,479	796,765	6,364	0
집행잔액	738,414	34,521	△268,777	23,636	6,000

* 신청건수: 신고기관, 신고일 기준으로 부패신고와 공공재정간 전환 지급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부패신고’ 신청건수에 복지부정·공공재정부정청구 등 신청 건을 통합하여 관리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공익신고 보상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내부 공익 신고자³³⁾’의 공익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

33)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해당 신고자가 권익위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고, 권익위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³⁴⁾.

- 공익신고법상 보상금은 공익신고로 인해 공익신고자가 입을 수 있는 신분상, 경제상 불이익을 보전하고 나아가 공익신고를 장려 및 활성화하기 위한 경제적 지원조치임³⁵⁾을 고려할 때, 지급요건을 충족한 신고자에게 적시에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음.

1. ~ 6. (생략)

7. “내부 공익신고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신고자를 말한다.

가. 피신고자인 공공기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나.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과 공사·용역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4)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보상금) ① 내부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벌칙 또는 통고처분

2.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3.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4. 과징금(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는 경우에 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포함한다)의 부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이나 판결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26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침해행위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진 자 또는 공직자가 자기 직무 또는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공공기관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⑤ ~ ⑦ (생략)

35) 헌법재판소 2021. 5. 27. 선고 2018헌바127 전원재판부 결정

○ 또한,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집행이 부진한 신고포상금은 제도개선을 통해 집행실적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³⁶⁾.

□ 따라서, 2025년 공익신고 보상금 신청·처리현황 및 공익신고 보상금 신청의 종결 사유 분석을 통해 제도개선을 통해 개선 가능한 사항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 공익신고 보상금 신청·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신청 838건 중 지급 33건, 기각 23건, 종결은 741건으로 나타남. 국민권익위원회는 종결 건수에는 특정인의 반복 신청 559건³⁷⁾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이를 제외한 182건의 종결 사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2025년 공익신고 보상금 신청·처리 현황〉

(단위: 건)

신청 건수	처리 건수			
	지급	기각	종결	계
838(279)	33	23	741(182)	797(238)

*괄호는 특정인의 반복 신청 건을 제외한 수치임.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 제9조에 따른 2025년 종결 사유별 통계 현황을 살펴보면, 종결 182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보상금 지급 신청이 명백히 타당성이 없는 경

36) 기획재정부,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2025.1., p.197

37) '23년까지 부패신고 보상금으로 신청하던 특정인이 '24년부터 공익신고 등으로 다수 신청

- 부패신고: ('21년)1,302건→('22년)2,194건→('23년)1,950건→('24년)4건→('25년)1건

- 공익신고: ('21년)0건→('22년)1건→('23년)8건→('24년)49건→('25년)559건

우(75건)와 내부 공익신고자가 아닌 경우(55건)로, 이는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에 해당하여 제도개선을 통해 개선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를 제외하면 ‘법률관계의 확정 등 보상금 신청요건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24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2025년 공익신고 보상금 종결사유 통계〉

(단위: 건)

종결사유	건수
1.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	3
1의2.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공익신고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
1의3.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끝낸 경우	3
2.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법률관계의 확정 등 보상금 신청요건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24
3. 제3조의3에 따른 보상금 지급 신청기간이 경과된 경우	-
4. 제4조제1항에 따른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5. 위원회의 재보완 요구(제6조에 따른 대리인 선임에 관한 재보완 요구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12
6. 제8조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신청을 취소한 경우	10
7. 제4조제6항 및 제6조제8항에 따른 확인 결과 신청인과 공익신고자의 동일인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
8. 제17조의2에 따른 연간 1인당 보상금의 지급건수를 초과하여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
9. 보상금 지급 신청인이 명백히 내부 공익신고자가 아닌 경우	55
10. 그 밖에 보상금 지급 신청이 명백히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34 (75)
※ 조사 및 수사중, 수입회복 없음, 동일 건의 반복신청·민원사항, 특정인(서OO)*의 신청 건 등	
합계	741 (182)

*괄호는 특정인의 반복 신청 건을 제외한 수치임.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법률관계의 확정 등 보상금 신청요건이 완성되지 않은 것은 신고자가 이를 직접, 적시에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되는 측면도 있으므로, 제도개선을 통해 법률관계 미확정 등을 이유로 종결되는 사례를 일부 감소시킬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공익신고자는 내부 정보인 수입 회복 사실을 알기 어렵고 그 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 등에 대한 법률관계의 확정 여부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예상됨. 이로 인해 보상금 지급신청 기한³⁸⁾을 놓치거나 법률관계 미확정을 이유로 각하 처리되는 사례³⁹⁾가 발생하고 있음.

□ 관련하여, 권익위가 마련하여 공공기관에 배포하고 있는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표준안’에는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이 직접 접수하여 처리한 공익신고로 인하여 수입의 회복 등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도록 규정⁴⁰⁾하고 있으나,

38)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보상금) ③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공공기관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9) 2014년 인천 요양병원 원무과장이 병원장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30여억원 환수처분 등을 이끌어 내었고 이에 따라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국민권익위원회는 신청인이 보상금을 신청하자 ‘법률관계 미확정’을 이유로 종결하였고, 이후 재신청하자 ‘신청기한 경과’를 사유로 보상금 지급 기각 결정을 하였음(‘21.9.7. SBS뉴스 “공익신고로 30억 넘게 환수...보상금은 못 줘”).

40)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표준안」 제30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이 직접 접수하거나 다른 공익신고기관으로부터 이송 받아 처리한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 공익신고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지할 수 있다.

동 표준안은 각 기관의 자체 규정 제·개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권고안으로, 각 기관의 해당 규정 마련 및 실제 통지 이행 여부를 권익위가 별도로 점검·관리하고 있지 않아 실제 이행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신고자가 처분결과나 법률관계의 확정 여부를 적기에 확인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자체 규정 제정 현황 등을 점검하는 한편, 통지 절차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추진될 필요가 있음⁴¹⁾.

□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발생하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공공기관이 이를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도록 절차를 마련하는 등 보상금 집행실적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41) 공익신고로 인한 공공기관 수입 회복 등의 사실을 통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개정안(조계원의원 대표발의, 제2216128호)이 정부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음.

5.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운영⁴²⁾: 채용실태 전수조사의 실효성 제고 필요 등

1) 사업 및 결산 개요

□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운영”은 공공기관 채용비리의 신고 접수·처리 및 채용실태 조사 등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 전담조직인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의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2022년까지 청탁금지제도운영사업 내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 운영’ 내역사업으로 편성되었으나 2023년 예산부터 별도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⁴³⁾, 2025년 예산액 1억원 중 2,000만원(20%)을 내역변경 및 자체전용하고 남은 예산현액 8,100만원 중 6,200만원이 집행(집행률 76.5%)되고, 1,9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5회계연도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운영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운영	100	-	△20	81	62	-	19	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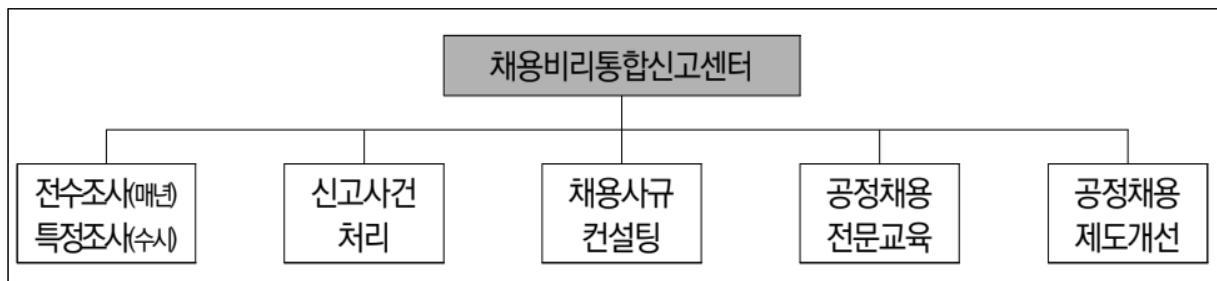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42) 세부사업: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운영(1136-369)

43) 2018년 1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다수부처 협업형 임시조직으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을 운영하였으나, 2023년 1월 채용비리 적발 외 사전 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위원회 총액인건비팀으로 설치함.

□ 동 센터는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를 보장하고자 하는 국정과제에 따라 출범하였는데, 상시적으로 채용비리 신고사건을 접수·처리하고 실태조사를 추진해 채용비리 사후적발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공직유관단체의 채용 사규 컨설팅, 공정채용 전문교육, 제도개선 등 사전예방 기능을 확대하여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노력을 전개해오고 있음.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주요 업무〉



(자료: 2025 국민권익 백서, p.75)

2) 검토의견

(1) 채용실태 전수조사의 실효성 제고 필요

□ 국민권익위원회는 2019년부터 매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추진해오고 있는데, 2025년에는 931개⁴⁴⁾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고, 2026년에는 1,502개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 중⁴⁵⁾에 있음.

44) 전체 공직유관단체(총 1,423개)를 대상으로 필수(617개)·재량(806개)으로 구분하여 조사

* 재량조사: 경영평가 미대상 기관 중 최근 3년간 채용비리가 발생하지 않은 기관
단, 재량조사 대상 기관도 3년 내 1회 이상 실태조사 실시

45) 조사기간: '26년 2월~10월(9개월)

○ 전수조사는 감독기관 주관으로 실시하되, 채용비리 발생비율이 높은 기관, 감독기관이 없거나 인사감사 권한이 불명확한 기관 중 징계 이상 적발 기관 등 일부 기관⁴⁶⁾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채용비리 적발 건수는 감소 추세에 있는데, 2021년 76건에서 2025년에는 34건으로 감소하여 제도 운영과 채용 비리 예방 활동이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최근 5년간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⁴⁷⁾〉

(단위: 건)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채용비리	수사의뢰	5	4	2	-	1
	징계요구	71	43	42	39	33
	소계	76	47	44	39	34
업무부주의	주의·경고	799	774	823	822	798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그런데, 단순한 적발 건수 감소만으로 채용의 공정성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조사의 정확성과 사후관리의 실효성

46) 2025년 기준 조사 완료 931개 기관 중 감독기관 주관 905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6개 기관

47) 채용비리 및 업무부주의 구분 기준

구분		세부 내용
채용비리	수사의뢰	○ 법령이나 정관·내규 등을 위반하여 채용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주는 행위로, 인사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치는 사항
	징계요구	○ 직원 채용 과정(채용공고, 심사위원 구성, 전형단계별 합격자 결정 등)에서 합격자 혹은 응시자의 평정순위가 변동될 수 있는 주요 채용절차 위반 사항
업무부주의		○ 경미한 절차 위반, 규정적용 단순오류 등 경미한 업무부적정 사항

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최근 5년간 전수조사 결과 수사의뢰 사건은 총 12건이었으나, 이 중 기소된 건은 1건에 불과하고 10건이 불기소로 종결되었음(1건 수사중). 수사의뢰 사건 대부분이 불기소로 종결된 점을 고려할 때, 조사 단계에서 위법행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증거 확보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수사의뢰 기준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점검과 보완이 필요함을 시사함.
- 또한,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수사의뢰 사건에 대한 후속조치 이행 여부도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수사의뢰 사건 12건 중 실제 징계 처분이 내려진 사건은 7건으로, 형사책임 유무와 별개로 기관 내부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징계 조치가 일관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고 그 이행현황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공공기관 채용비리 수사의뢰 사건에 대한 조치결과〉

(단위: 건)

구분	수사의뢰	수사의뢰 결과			후속조치 (징계)
		기소	불기소	수사중	
2021년	5	1	4	-	2
2022년	4	-	4	-	3
2023년	2	-	2	-	1
2024년	-	-	-	-	-
2025년	1	-	-	1	1
계	12	1	10	1	7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실태조사는 행정조사로서 조사 대상자의 자료 제출 등을 강제할 수 없는 제도적 한계가 있어 실태조사 결과 민간인 또는 다른 기관 직원과 유착 등 범죄행위의 상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 보다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수사를 의뢰할 수밖에 없고, 감독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시 유의사항 배포·설명회 개최 등 조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징계 등 후속조치는 개별 기관별로 자체 징계 기준 등에 따라 처리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그러나, 전수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정확한 조사와 철저한 후속조치가 필수적이며, 채용비리 근절 총괄기관으로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과 노력이 요구됨.
-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채용실태 전수조사의 기준과 조사 역량을 보완하여 조사의 정확도를 제고하는 한편, 후속조치 이행현황을 확인하는 등 전수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공공기관 채용비리 신고사건 신속 처리 필요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부문 채용비리 신고를 연중 접수·처리하고 있는데, 신고사건 처리는 증거 확인, 신고자 면담 외에도 관계기관 현지 출장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확인 후 처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국내여비(220-01목)를 편성·집행하고 있음.

○ 2025년에는 신고사건 147건을 접수하고 174건을 처리하였는데, 이를 처리하기 위한 국내출장은 7건 실시되어, 2023년 27건과 2024년 38건 대비 출장 조사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이로 인해 국내여비 예산액인 4,200만원 중 47.6%인 2,000만원을 타 세부사업 부족분 충당을 위한 전용·내역변경 등의 재원으로 사용함.

〈공공기관 채용비리 신고사건 접수·처리 현황〉

(단위: 건)

구분	사건접수 (배정)	처리			
		계	이첩	송부	종결·기각
2023년	131	116	17	32	67
2024년	129	91	5	38	48
2025년	147	174	7	44	123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국내출장 건수 및 국내여비 집행 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분	신고사건		실태조사	
	건수	집행액	건수	집행액
2023년	27	6	322*	124
2024년	38	4	54	12
2025년	7	1	53	10

* ‘선거관리위원회 채용비리 실태 전수 조사단’ 출장 포함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사건은 그 내용에 따라 현지조사가 필요한 사안이 있고 채용서류 검토가 중점이 되는 사안이 있으며, 최근 업무량 증가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유선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해 조사를 충실히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임.

□ 그러나 비대면 조사 등을 통해 효율적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에도, 공공기관 채용비리 신고사건 중 종결 처리된 사건을 제외한 이첩·송부 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점차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2023년 42일 → 2024년 72일 → 2025년 111일)⁴⁸⁾.

〈공공기관 채용비리 이첩·송부 건 평균 처리기간〉

구분	이첩·송부(건)	평균 처리기간(일)
2023년	49	42
2024년	43	72
2025년	51	111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공공기관 채용비리 신고사건의 처리가 지연되는 것은 신고사건 관계자들의 신분을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하고 신고사건 처리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이라는 출범 취지에 부합하도록 조사인력의 적절한 확보 등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신고사건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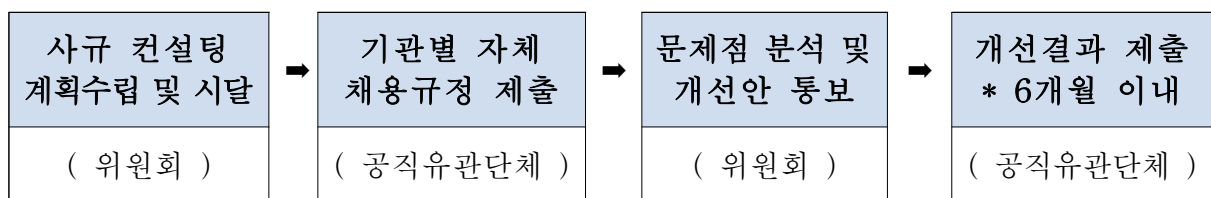
48) 권익위는 2024년에 약 8개월 간 전담 조사인력이 1명으로 감축 운영되어 신고사건 처리기간이 지연되었고, 2025년에도 전년도 이월사건이 처리되는 등의 사유로 평균 처리기간이 길게 집계되었다는 설명임.

(3) 공직유관단체 채용 규정 개선 컨설팅 사후관리 강화 등 채용비리 재발 방지 필요

□ 국민권익위원회는 채용비리 사후점검뿐 아니라 채용비리 예방을 위하여 공직유관단체 대상 채용 규정 개선을 컨설팅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비리 유발 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채용비리 발생 방지에 기여하고 있음.

○ 컨설팅은 기관에서 제출한 채용규정이 법령 및 상위지침에 위배되거나 누락된 사항이 있는지 등을 점검·분석하여 개선안을 통보하고, 조치기한 6개월 이내 그 이행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공직유관단체 채용 규정 개선 컨설팅 업무 흐름도〉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2023년에는 354개 기관, 2024년과 2025년에는 각각 402개 기관을 대상으로 채용 규정 개선 컨설팅을 실시하였는데, 2026년 5월 기준 이행률은 2023년 78.5%, 2024년 77.1%, 2025년 51.7%로 사후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특히, 2025년 11월 기준 이행률은 50%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

으나⁴⁹⁾, 이후 국민권익위원회가 두차례 걸쳐 이행 독려 공문을 발송함에 따라 회신 기관의 절반 가량이 6개월 이후 추가로 이행 결과를 회신하면서 이행률이 상당 부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이는 이행 독려 등 사후관리가 실제 이행률 제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앞으로도 개선안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공직유관단체 채용 규정 개선 컨설팅 이행 결과〉

(단위: 건, %)

구분	채용 규정 컨설팅(A)	조치 결과 회신(B)	회신율(B/A)
2023년	354	278	78.5
2024년	402	310	77.1
2025년	402	208	51.7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6개월 이후 조치 결과 회신 기관 현황〉

컨설팅 실시연도	6개월 이후 조치 결과 회신 기관	
2023년	128개	46.0%
2024년	151개	48.7%
2025년	21개	10.1%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49) 2025년 11월 기준 이행률은 2023년 47.2%, 2024년 44.5%, 2025년 12.7%였음.

□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사규 컨설팅 반영 결과를 6개월 이내로 회신할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회신을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기관 자율적으로 반영 결과를 회신하고 있다는 입장임.

□ 그러나 최근 5년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조사 시 적발된 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5년 연속 매년 적발된 기관이 43개, 4회 적발된 기관 90개, 3회 적발된 기관이 169개로 동일한 기관이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음을 알 수 있음.

○ 이러한 결과는 채용비리 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채용 규정 개선 컨설팅이 실제 채용절차 개선과 재발 방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다 충실히 관리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2021년~2025년 전수조사 시 반복 적발 기관 현황〉

적발 횟수	5회	4회	3회	2회
기관 수	43개	90개	169개	308개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가 채용 관련 규정 개선 컨설팅을 하는 취지는 엄정한 채용 관련 규정의 미비가 채용 비리로 이어진다는 판단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바, 컨설팅 후 그 이행을 관리하지 않는 것은 컨설팅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으로 이해됨.

□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개선안 이행결과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기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반복 적발기관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채용비리 예방 및 재발방지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6. 행정심판운영⁵⁰⁾: 집행 효율성 제고를 위한 예산 편성방식 개선 필요 등

1) 사업 및 결산 개요

- “행정심판운영”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지원, 각급 행정심판위원회 및 처분청 담당자 교육, 모의행정심판경연 등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15억 4,300만원 중 13억 2,400만원이 집행(집행률 85.8%)되고, 2억 1,900만원이 불용되었음.
- 내역사업인 “행정심판운영지원”은 비상임위원 수당·국선대리인 사례비·경상경비 지급 등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9억 2,700만원 중 8억 2,000만원을 집행(집행률 88.5%)하고 1억 700만원을 불용하였음.
- 내역사업인 “모의행정심판경연”은 법학전문대학원생 등에게 행정심판의 폭넓은 이해와 경험을 제공하여 행정심판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1,100만원 중 1,100만원이 집행(집행률 100%)되었음.

50) 세부사업: 행정심판운영(1137-370)

〈2025회계연도 행정심판운영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행정심판운영	1,543	-	-	1,543	1,324	-	219	1,344
- 행정심판운영지원	922	-	5	927	820	-	107	825
- 모의행정심판경연	12	-	△1	11	11	-	-	12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2) 검토의견

(1) 집행 효율성 제고를 위한 예산 편성방식 개선 필요

□ “모의행정심판경연” 사업의 2025년도 예산은 총 1,200만원으로, 비목별로는 일반수용비(210-01) 600만원, 국내여비(220-01) 200만원, 사업추진비(240-01) 4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음.

○ 해당 사업은 예산이 최초 편성된 2018년을 제외하고는⁵¹⁾ 해마다 유사한 형태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으며, 사업수행이 정착화된 2022년부터는 매년 같은 비목에 같은 금액이 편성되고 있음.⁵²⁾

51) 2018년의 경우 대회우수자를 대상으로 안전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목적으로 일용임금(4,500만원)이 편성되었었음.

52) 2021년까지는 대회 우수자 포상을 위한 포상금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었으나, 2022년부터는 일반수용비 6백만원, 국내여비 2백만원, 사업추진비 4백만원으로 동일하게 편성되고 있음.

□ 동 사업의 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사업이 시작된 후 매년 일정 규모의 집행잔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매년 반복되는 국내여비 및 사업추진비 비목의 집행이 부진하기 때문임.

〈모의행정심판경연 사업 결산 내역(2019년~2025년)〉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A)	이·전용 등	집행액 (B)	불용액	집행잔액 (A-B)	집행률 (B/A)
2019	16	△2	13	1	3	81.25
2020	18	-	14	4	4	77.78
2021	18	-	16	2	2	88.89
2022	12	△1	9	2	3	75
2023	12	△4	8	-	4	66.67
2024	12	△2	10	-	2	83.33
2025	12	△1	11	-	1	91.67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모의행정심판경연 사업 비목별 집행 내역(2021년~2025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예산	집행액	예산	집행액	예산	집행액	예산	집행액	예산	집행액
일반수용비	6	7	6	7	6	7	6	7	6	9
국내여비	2	1	2	-	2	-	2	2	2	1
사업추진비	4	2	4	2	4	1	4	1	4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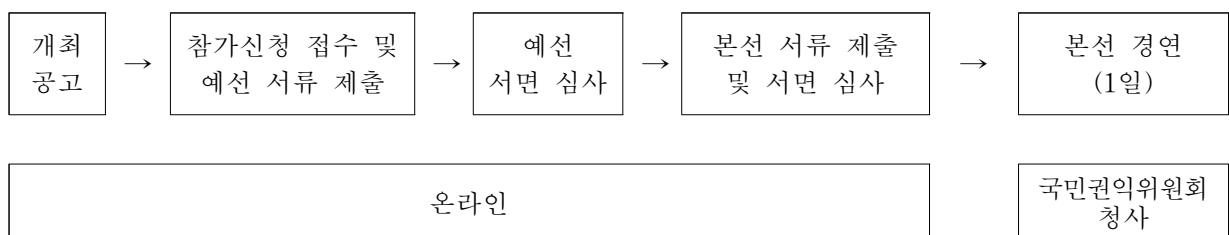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동 내역사업의 국내여비 및 사업추진비 비목의 집행이 지속적으로 부진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사업의 내용과 특성에 따른 지출 구조를 고려하지 않고, 연례적으로 같은 비목에 동일한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기 때문임.

○ 동 내역사업은 법학전문대학원생 등이 참가하는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를 개최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대회는 ① 참가자의 온라인 참가 신청 및 예선 서류 제출 → ② 예선 서면 심사 → ③ 본선 경연 대회(국민권익위원회 심판정) 순으로 진행되므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대회 준비 및 진행 소모품 구입, 심사위원 수당 등 일반수용비로 지출할 비용과 참가자 간담회 등을 위한 사업추진비 일부 금액을 제외하고 다른 비목의 예산편성 필요성이 낮은 구조임.

- 특히, 동 대회는 이미 10회의 대회가 개최되어 그 진행방식이 정착화된 시점임을 고려할 때, 업무협의를, 출장 등의 지출원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 국내여비, 사업추진비가 현 규모로 편성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진행 방식〉



- 2025년에는 편성된 예산 중 약 91.67%가 집행되어, 예년에 비하여 집행액 및 집행률이 증가한 측면이 있으나, 이러한 집행을 상승이 지출 내용의 변화 또는 지출 구조의 변화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동 사업의 편성상 문제점 및 편성 방식 변경의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
- 2025년 집행액 및 집행률이 상승한 것은 전년 대비 일반수용비 지출이 200만원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이러한 변화는 심사위원 인원 및 수당을 늘렸기 때문이지 다른 지출원인이 발생한 것은 아니어서, 국내여비(집행률 50%) 및 사업추진비(집행률 25%)의 집행 부진은 2025년도에도 계속되고 있음.

〈전년 대비 심사위원 수당 변화〉

(단위: 명, 만원)

구분	2024년			2025년		
	합계	인원	수당		인원	금액
예산	180	6	30	150	3	50
본선	150	3	50	350	7	50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또한, 국내여비의 집행액의 경우 심사위원 교통비 및 숙박비에 사용된 것으로, 그 중 약 86.3%가 2명의 심사위원에게 집중되어 있는데, 해당 심사위원이 대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인원이 아니라면 국내여비를 현재 금액만큼 편성할 필요가 낮은 것으로 보임.⁵³⁾

〈본선 심사위원 여비 지급 내역〉

(단위: 천원)

성명	여비(국내여비)		
	계	교통비	숙박비
A	11.6	11.6	-
B	37	37	-
C	37	37	-
D	445	258	187
E	37	37	-
F	271.4	84.4	187
G	-	-	-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이상을 종합하면, 모의행정심판경연 내역사업은 사업의 내용 및 특성, 정착된 운영 방식 등을 고려할 때, 국내여비 및 사업추진비가 편성될 필요가 낮고, 그 금액이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하여 집행 부진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는 모의행정심판경연의 예산을 사업의 특성과 지출 구조에 부합하도록 국내여비, 사업추진비 등을 감액하여 편성하는 등 그 편성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동 대회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모의헌법재판 경연 대회”의 경우 대회 시상자들에게 지급되는 포상금 비목을 제외하면 일반수용비와 사업추진비로만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사업추진비의 편성 금액은 동 사업의 50% 수준임.⁵⁴⁾

53)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p. 236.)에 따르면, 국내여비는 최대한 아껴서 제대로 쓸 수 있는 만큼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음.

54) 내역사업 “헌법재판 경연대회 개최”(헌법재판소): 일반수용비 17백만원, 사업추진비 2백만원, 포상금 24백만원

(2) 환경 변화에 따른 지출 규모 변화를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할 필요

□ 내역사업인 “행정심판운영지원” 사업의 2025년도 예산은 9억 2,200만원으로, 이 중 2억 4,900만원이 공공요금 및 제세 비목(210-02)으로 편성 되었음.

○ 동 내역사업의 공공요금 및 제세 비목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되는 행정심판 사건에 대한 각종 서면 등의 송달 및 통지⁵⁵⁾ 등을 위한 우편·통신요금을 지급하기 위한 용도로 편성되는 것임.

□ 그런데, 최근 공공요금 및 제세 비목의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2025년 집행액은 약 1억 9,000만원, 집행률은 76.3%로, 동 비목의 집행액과 집행률은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 집행액이 급증하였던 2023년을 제외하고는⁵⁶⁾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고, 2024년과 2025년에는 특히 집행이 부진하였음.

〈최근 5개년(2021년~2025년) 공공요금 및 제세 비목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편성액	집행액	집행률
2021	249	236	94.7
2022	249	232	93.1
2023	249	277	111.2
2024	249	191	76.7
2025	249	190	76.3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55) 행정심판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서, 답변서 송부, 심리기일·심리결과 재결서 등의 송달 및 통지
56)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 3. 비난과 욕설이 대부분인 행정심판을 1만 건 이상 청구한 ○씨에 대한 행정심판을 모두 각하하였는데, 이로 인한 우편요금은 3년간 7,200만원이었음(국민권익위원회 2024. 3. 18. 보도자료 참조)

□ 동 비목의 집행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이유는, 동 비목이 주로 사용되는 용도인 우편요금의 집행이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이는 청구인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식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최근 5개년(2021년~2025년) 우편요금 및 통신요금 집행 현황〉

(단위: 천원)

연도	합계	우편요금	통신요금
2021	236,180	229,878	6,302
2022	232,092	224,473	7,619
2023	276,633	266,785	9,848
2024	191,340	180,648	10,692
2025	190,933	182,028	8,905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식에는 ①심판청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식과 ②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운영되는 전자정보처리조직(이하 “온라인시스템”이라 함)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방식이 있는데, 심판을 청구하는 방식에 따라 그 통지 방법이 상이하고, 그 중 온라인시스템을 통한 행정심판 청구의 경우에는 우편요금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통신의 방법으로 통지가 가능하게 됨.

- 서면으로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청구인이 송달 방법의 변경을 신청하지 않는 이상 우편을 통하여 송달이 이루어지나, 온라인시스템을 통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종 서면에 대한 송달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루어질 수 있고, 이에 대한 통지는 문자 등 통신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됨.⁵⁷⁾

〈우편요금 및 통신요금 단가〉

구분	우편요금	통신요금		
		SMS	LMS	카카오톡
건당 단가	50g 520원 (50g 증가 시 120원 추가)	8.03원	26.4원	4.95원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그런데, 최근 접수된 행정심판 사건의 청구 방식을 살펴보면, 온라인을 통하여 심판을 청구하는 사건의 수는 상대적으로 증가한 반면, 서면을 통하여 심판을 청구하는 사건의 수는 감소하였음.

57) 「행정심판법」 제54조(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송달 등) ①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는 제52조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심판참가를 한 자에게 전자정보처리조직과 그와 연계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재결서나 이 법에 따른 각종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이나 참가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 위원회는 송달하여야 하는 재결서 등 서류를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여 등재한 다음 그 등재 사실을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전자우편 등으로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서류 송달은 서면으로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④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청구인이 제2항에 따라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에 전자정보처리조직에 기록된 내용으로 도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그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2주 이내(재결서 외의 서류는 7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2주가 지난 날(재결서 외의 서류는 7일이 지난 날)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⑤ 서면으로 심판청구 또는 심판참가를 한 자가 전자정보처리조직의 이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52조·제53조 및 이 조를 준용한다.
 ⑥ 위원회, 피청구인,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 간의 서류의 송달 등에 관하여는 제52조·제53조 및 이 조를 준용한다.
 ⑦ 제1항 본문에 따른 송달의 방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최근 5개년(2021년~2025년) 청구 방식별 행정심판 접수 건수〉

(단위: 건, %)

연도	계	온라인 청구	서면 청구	전체 사건 대비 온라인 청구 비중
2021	39,722	18,061	21,661	45.5
2022	45,776	27,319	18,457	59.7
2023	57,279	41,388	15,891	72.3
2024	43,932	28,577	15,355	65.0
2025	45,309	28,587	16,722	63.1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이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고비용이 소요되는 우편의 방법으로 통지하는 건수는 감소한 반면, 통신의 방법으로 통지하는 건수는 증가하였음.

〈최근 5개년(2021년~2025년) 통지 방법별 통지 건수〉

(단위: 건, %)

연도	계	우편 통지	통신 통지	전체 통지 건수 대비 통신 통지 비중
2021	290,443	86,632	203,811	70.2
2022	327,555	82,756	244,799	74.7
2023	469,474	101,380	368,094	78.4
2024	355,924	66,430	289,494	81.3
2025	386,951	60,074	326,877	84.5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즉, 행정심판운영지원 사업의 공공요금 및 제세 비목의 집행액 감소는 행정심판 청구 방식 변화에 따른 지출구조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그 밖에 비상임위원들이 그동안 우편으로 송부되어 온 심사자료를 통하여 안건을 검토하였던 방식에서 온라인시스템을 통하여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기능을 개선(e-위원시스템)⁵⁸⁾한 환경 변화 등도 우편요금 감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집행 부진을 해소하기 위하여 행정심판 청구 방식 변화 등 환경 변화에 따른 지출 규모 변화를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58) 비상임위원들이 안건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서류를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시정 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조치 상황
(1) 과태료·이행 강제금 부과 시 면밀한 법리 검토 필요	○ [지적사항]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이행강제금,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황을 살펴보면, 총 21건 중 16건 (76.1%)이 취소됨 - 권익위의 24년 1심 판결 선고 9건 중 패소가 5건(내지 승소 2건, 각하 2건) - 소송이 제기된 9건 중 패소가 8건으로 패소 비율이 너무 높으며, 최근(2024.3.4.) 대법원 최종선고가 내려진 2건의 결과를 보면 구법에 규정된 원인행위에 대해 신법을 근거로 처분하였다가 패소하는 등 일반적인 수준의 주의만 기울였다면 충분히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는 처분이 존재함 - 결과적으로 권익위의 잘못된 또는 성급한 법 집행이 미수납의 원인일 뿐만 아니라, 처분 부과 대상자인 국민에게 불필요한 비용 및 부담을 초래함 ○ [시정요구사항] 국민권익위원회는 잘못된 법 집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향후 이행강제금 부과 시 직원 교육 등을 통해 법령 해석에 관한 주의·절차를 강화하여 처분에 관한 국민의 신뢰성을 제고할 것	○ 향후 이행강제금 부과 시 법령 해석·기준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권익위 결정의 정당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31일	조치완료

시정 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조치 상황
(2) 공공기관 부패·공익 신고 보상금 상환액 징수 노력 강화 필요	○ [지적사항] 공공기관에게 상환받아야 할 부패신고 보상금 상환액 2억 5,100만원, 공익신고 보상금 상환액 1,600만원이 미수납되어 보상금 상환액 미수납액이 2024년 전체 기타 경상이전수입 미수납액의 89.3%를 차지함 - 권익위가 신고자 보·포상금으로 집행하는 금액이 연간 50억원을 상회함 - 신고보상금 상환액 미수납 해소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상환금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할 것을 요청하고, 독촉 공문 발송 및 납부 독려를 위한 출장을 실시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공문 발송 횟수는 2022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방문 출장 또한 연말에 5~7개 기관에 한정됨 ○ [시정요구사항] 국민권익위원회는 다른 공공기관이 부담해야 할 보상금을 징수하는 업무를 보다 철저히 수행할 것	○ 향후 공공기관의 보상금 상환액 수납률 증가를 위해 노력하겠음 - 법정 상환기간 내(3개월) 상환금 납부가 가능하도록 각 공공기관이 상환금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할 것을 요청하고, * 부패·공익신고 보상금 상환액 '26년도 본예산 편성 협조요청 공문 발송(9.8, 245개 지자체) - 미수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공공기관에 매월 독촉공문을 발송하고, 장기 연체기관에 대한 주기적인 현지점검 등을 통해 상환금 납부가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하겠음 * 독촉공문 발송: 매월, 현지점검: 8개 기관('25.2.19.~12.18.) ○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31일	조치완료
(3) 총액인건 제도 준수 필요	○ [지적사항] 총액인건비 대상경비(인건비와 운영경비)는 총액인건비 비대상경비로 우회 집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주요 사업비의 일용임금 예산”으로 “총액인건비 대상경비인 인건비(대상)”를,	○ 총액인건비제도의 기본 취지를 고려하여 2025년에는 이·전용 등 예산 변경없이 편성된 범위 내에서 집행하였음 - 향후에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음	조치완료

시정 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조치 상황
	“기관운영기본경비(비대상) 예산”으로 “기관운영기본경비(대상)의 일용임금(110-04)과 고용부담금(320-09)”을 각각 충당하였는바, 이는 총액인건비 제도 위반임 - 총액인건비제도의 기본 취지는 각 부처 특성에 맞는 자율적인 조직·보수제도를 운영하도록 하여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정부 조직의 성과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시정요구사항] 국민권익위원회는 향후 총액인건비제도의 기본 취지를 몰각시키는 행위를 지양할 것	○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31일	
(4) 국고금 관리법 준수 필요	○ [지적사항] 국고금 관리법령은 출납 공무원이 관서운영경비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 중 운영비(210목)의 최고금액을 건당 500만원으로 설정하고 있음 - 그러나 ‘반부패기술지원(ODA)’ 사업의 임차료(210- 07목)에 속하는 관서운영경비 2건(각각 808만원, 533.5만원), ‘기관운영기본경비(비대상)’ 사업의 시설장비유지비(210-09목)에 속하는 관서운영경비 1건(636.8만원) 등 총 3건의 관서운영경비가 출납 공무원에 의해 건당 5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됨	○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규정을 숙지하도록 안내하였으며, -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재정정보원·감사교육원 등 관련 기관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유사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였음 ○ 앞으로도 관련 규정에 대하여 숙지하고,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조치완료

시정 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조치 상황
	○ [시정요구사항]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고금 관리법」 위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을 강화할 것	○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31일	
(5) 기관 홍보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연간 집행계획 마련	○ [지적사항] 2024년도 홍보비 예산은 전체 집행액 중 약 70.7%를 4분기에 집행하였고, 월별로 구분하여 보면 전체 집행액 중 약 51.7%를 12월에 집행하여, 연말에 홍보 사업이 집중 추진됨 - 사업 예산의 연말 집중 집행은 바람직한 재정 운용이라 할 수 없고, 홍보사업이 특정 기간에 집중하여 이루어지는 것은 사업 효과성 측면에서 비효율적임 ○ [시정요구사항] 국민권익위원회는 기관의 홍보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맞추어 분산 집행하여 홍보효과가 반감되지 않도록 할 것	○ '25년 위원회의 홍보사업이 연말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연간 예산집행 계획을 수립('25.3월)하였고, 가급적 계획에 맞게 분산하여 집행함 ※ (1분기) 12.0%, (2분기) 21.7%, (3분기) 21.8%, (4분기) 44.5% ○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31일	조치완료
(6) 장기간 미이행 과제의 신속한 이행 필요	○ [지적사항] 2024년 12월 말 기준 이행조치기한이 도래한 186개 과제 중 이행이 완료된 과제 수는 82개에 불과하고, 제도개선 권고 이행조치 기한을 3년 이상 도과한 과제 수는 17건에 달함 ○ [시정요구사항] 국민권익위원회는	○ 제도개선 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행률이 저조한 기관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하여, 맞춤형 이행컨설팅을 실시하도록 '26년 업무계획에 반영하였음 ※ 이행컨설팅은 기존에는 신청한 기관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권고 미이행 기관 중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관을	조치완료

시정 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조치 상황
	사전적 부패 예방 및 고충 해소를 위하여 제도 개선 권고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대상으로 권고 취지 설명, 모범 이 행사례 등을 제공 - 특히, 주요 장기간 미이행 과제가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병행하여 실제 추진상황을 면밀히 확인하여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도출 하는 등으로 이행 독려 ○ 앞으로 장기간 미이행 과제에 대해 정기 점검 및 추적관리 강화를 통해 관리 밀도를 높여 신속한 이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음 ○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31일	
(7) 민원 상담위원의 고용방식 또는 근무형태 개선 필요	○ [지적사항] 종합민원상담센터 내 민원 상담위원은 국민권익위원장이 임기 1년으로 하여 위촉하는 위촉직임에도, 고용부담금 비목에서 사회보험료를 집행함 - ‘고용부담금’ 비목은 기타직·상용직· 일용직 등을 고용함에 따라 사용자인 국가기관이 부담하여야 하는 퇴직금 및 사회보험료 등을 집행하기 위한 예산임 - 민원상담위원에 대한 고용부담금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민원상담위원을 상용직 또는 일용직으로 고용하여 인건비를 지급하였어야 하고, 민원 상담위원을 위촉직으로서 수당을	○ 민원상담위원에 대한 고용방식 개선 방안 마련('25.12.9.) - '26년 중 관련 부서 간 협의 및 규정 개정 등 추진하여 민원상담위원 법적 지위와 대가의 지급방식이 부합하도록 조치 ○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9일	조치완료

시정 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조치 상황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도록 근무형태를 개선하여야 함 ○ [시정요구사항]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상담위원에 대한 고용방식 또는 근무형태를 개선함으로써 민원상담위원의 법적 지위와 대가의 지급방식이 부합하도록 할 것		
(8) 국민콜110 상담사 권익증진 필요	○ [지적사항] 국민콜110 상담사 휴·퇴직 등에 따른 인건비 불용이 지속되고 있고, 2024년의 경우에는 타사업의 상용임금으로 5억 3,000만원을 전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8,600만원에 달함 ○ [시정요구사항]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콜110 상담사 상용임금 불용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상담사 처우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25년 상담사 결원 발생에 따른 신규 채용을 4회(3월, 8월, 9월, 10월) 추진하였음 ○ '26년 예산에 공무원 기본급 3.8%, 명절상여금 131.3% 증액 반영하였음 ○ 향후에도 상담사 근속수당 확보 등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31일	조치완료
(9) 업무별 예산 구분 편성·집행 필요	○ [지적사항] 내역사업인 '행동강령 위반 신고 처리 및 운영·이행실태 점검'은 신고 사건 처리와 기관별 행동강령 운영·이행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예산이 구분되지 않은 채 사용되고 있음	○ '27년도 주요사업비 1차 심의결과(기획예산처) 해당 세부사업(공직자 행동강령운영) '27년 예산 미편성됨 ○ 조치완료일 : 2026년 6월 9일	조치완료

시정 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조치 상황
	○ [시정요구사항] 국민권익위원회는 행동강령 위반 신고 처리와 일상적인 점검 활동을 구분하여 예산을 편성·집행할 것		
(10)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관련 국회 자료요구 성실 이행 및 예산집행 점검 협조	○ [지적사항]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조사의 과정·내역·내용에 대한 자료 요구에 대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8조(비밀누설 금지) 등을 근거로 제출을 반복적으로 거부하고 있음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을 제외하고는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음에도 국회의 예산 집행 점검 절차에 일체 대응하지 않는 것은 적절한 태도로 보기 어려움 ○ [시정요구사항]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등의 처리와 관련한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 협조할 것	○ 향후에도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실히 자료 제출에 임하겠음 ○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31일	조치완료
(11)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자	○ [지적사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법 위반행위 신고자에게 보·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최근 4년(2022년~2025년) 보상금 신청인원이 8명에 그쳤고, 그 중	○ 2025년 예산 편성시부터 보·포상금 관련 비목이 타 세부사업으로 일원화되었음 ○ 향후 보·포상금 지급요건에 부합하는	조치완료

시정 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조치 상황
보·포상금 지급 예산 불용 최소화 필요	지급요건을 갖춘 신고사건이 부재함에 따라 관련 예산 전액이 불용되고 있음 - (2022년) 500만원, (2023년) 600만원, (2024년) 600만원 전액 불용 발생 - 2025년 예산 편성시부터 각 세부사업에 편성되어 있던 보·포상금(부패신고·공익신고·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청탁금지 위반행위 신고·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을 신고자보호 보상및공익신고제도운영(1136-364) 사업으로 일원화 ○ [시정요구사항] 국민권익위원회는 보·포상금 관련 비목이 일원화되었으므로, 예산불용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사건을 적극 발굴하여 관련 예산이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31일	
(12) 합리적 사업계획 수립 필요	○ [지적사항] 내내역사업인 ‘원스톱 행정심판시스템 구축’은 예산 확보를 전제로 무리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1차년도 구축 사업 착수가 지연 (2024년 6월~2025년 6월)되었고 2차년도 고도화 사업 또한 지연되었음 - 이에 따라 예산 집행률은 최근 3년 평균(97~99%)보다 크게 낮은 85.2%에 그쳤으며, 일반연구비 잔금 및 자산취득비 등 32억 3,600만원이 이월되었음 ○ [시정요구사항] 국민권익위원회는	○ 향후 예산을 적기에 확보하고,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는 등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 해당 사업은 '25.6월 개통하였으며, 고도화사업도 12월 완료하여 원활히 운영하고 있음 ○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31일	조치완료

시정 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조치 상황
	향후 예산 확보를 전제로 한 무리한 사업계획 수립을 지양하고, 현실적인 일정계획을 마련하는 등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13)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 참여율 개선 필요	○ [지적사항] 내내역사업인 ‘원스톱 행정심판시스템’은 당초 전 기관 통합을 목표로 하였으나, 전체 118개 행정심판기관 중 28개 기관이 불참하여, 2025년 6월 개통 시 90개 기관만이 참여하였음 ○ [시정요구사항] 국민권익위원회는 청구인 편의성 제고라는 정책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에 행정심판 기관의 참여율을 제고할 것	○ 행정심판시스템 참여 기관 확대를 위해 미참여 행정심판 기관과 지속적 으로 협의하여 통합을 확대해 나가 겠음 ○ 조치예정일 : 2026년 12월 31일	조치중
(14) 국회의 예·결산 심사 기능을 무력화하지 않도록 주의 필요	○ [지적사항] ‘청렴정책 모니터링’ 사업을 당초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2030자문단 운영’ 사업으로 임의로 전환하여 운영하였고, 이에 필요한 예산액을 충당하기 위해 기존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청렴정책 모니터링’ 사업을 폐지함과 동시에 동 사업에 편성된 일반용역비(210-14) 4000만원을 일반수용비(210-01)로 전액 세목조 정하였고, 추가로 일반수용비(210-01) 50만원을 임차료(210-07)로 세목조정함 - ‘청렴정책 모니터링’ 사업과 ‘2030자 문단 운영’ 사업은 사업 대상 인원·	○ 향후 예산 편성 및 국회 심의 과정을 통해 확정된 예산 내용을 준수하고 본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사업을 임의로 신규 편성하여 당초 계획과 다른 내용으로 예산을 사용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음 ○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31일	조치완료

시정 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조치 상황
	프로그램 내용 및 사업 성과 등이 상이하며, 특히 국회가 심의 및 확정된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2030자문단 운영 사업비를 임의로 세목조정한 것은 부적절함 -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지적되어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회의 예·결산 심사 기능을 무력화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으나, 이번에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됨 ○ [시정요구사항]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의 자체 예산안 편성절차와 국회의 심사 절차를 정상적으로 거친 사업을 임의로 대체하여 세목조정한 것은 국회의 예·결산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15)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용역사업 신규 추진 지양	○ [지적사항] 내내역사업인 ‘미래세대 대상 청렴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은 일반용역비(210-14목)가 예산액의 2배 이상 집행되었는데, 이는 당초 계획에 없던 신규 용역사업인 ‘초등학생 청렴캠프’를 추진한 것에 주로 기인함 - 회계연도 예산 배정이 이루어지자마자 다른 비목의 예산을 조정해 당초 예산 편성 및 국회 심의과정	○ 앞으로는 예산 편성 및 국회 심의 과정을 통해 확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하겠음 ○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31일	조치완료

시정 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조치 상황
	에서 반영되지 않은 새로운 용역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집행 방식임 ○ [시정요구사항] 국민권익위원회는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집행 방식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16) 고위공직자 직무관련 이해관계 점검체계 보완 필요	○ [지적사항]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 청렴 관리의 총괄기관으로서 고위 공직자의 직무관련 이해관계에 대한 점검 및 조기 인지가 가능했음에도,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질병관리 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배우자가 코로나 19 관련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사실 조차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는 등 제도운영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 하였음 ○ [시정요구사항]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을 기반으로 사전적인 위험 식별과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련 점검 체계를 보완·강화할 것	○ 고위공직자 본인 및 그 가족 등과 사적이해관계가 있는 법인·단체 등에 대한 사전확인·관리를 위해 이해충돌 방지법 개정 추진 ○ 조치예정일 : 2026년 12월 31일	조치중
(17) 행정심판 법정 처리기간 준수 필요	○ [지적사항] 법정 최장 처리기간(90일)을 초과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고, 특히 사실관계, 법리적 쟁점 또는 이해 관계 등이 복잡한 재정경제, 국토	○ 처리기간이 긴 심판과로 인력이 재 배치 될 수 있도록 행정심판국 내 인력 재배치 및 복직자 우선 배치 완료 - 또한, 정기적으로 부서별 사건 처리 기간을 모니터링·관리하여 처리기간	조치완료

시정 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조치 상황
	평균 80일 이상의 처리 기간을 보이고 있음 ○ [시정요구사항] 국민권익위원회는 평균 재결기간이 긴 유형의 사건을 중심으로 신속한 재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것	단축 노력, 복잡하고 난이도 있는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조사관 교육 강화 ○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31일	
(18) 자치법규 부패영향 평가 개선권고 이행을 제고 노력 필요	○ [지적사항] 국민권익위원회는 제·개정 법령 및 자치법규에 내재하는 부패 유발요인을 분석·평가하고, 이에 대해 개선권고 후 이행 실태를 점검함. 그런데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대한 이행 실적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 구체적으로 2022년 권고의 이행률이 제·개정법령은 91.7%, 자치법규는 70.6%로 양자 간 21.1%p, 2023년 권고의 이행률은 제·개정법령은 82.9%, 자치법규는 46.2%로 양자 간 36.7%p의 차이를 보였음 ○ [시정요구사항]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및 업무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 정기적으로 이행실태 점검, '25년부터 부진기관 대상으로 현장 점검 등을 실시하여 신속한 이행 독려 ○ 이행현황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유관기관 등에 우수사례 공유, 맞춤형 컨설팅 등 실시 완료 ○ 조치완료일 : 2025년 11월 25일	조치완료